



토론회

내란음모사건 3년, 한국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2016년 8월 24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_ 인권단체연석회의, 박주민의원실

목 차

목 차	2
프로그램	3
축 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
발 제	내란음모사건 그리고 그 이후 : 민주적 입헌주의의 위기 _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
토 론	내란음모사건 3년, 우리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_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다른백년 연구원장)	30
토 론	정치사법과 국가폭력의 극복을 위하여 _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4
토 론	_김철준 (법무법인 다산 대표 변호사)	39
토 론	'내란음모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것들 _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40

주 제

내란음모사건 3년, 한국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 사회 _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
- 발제 _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_김동춘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_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_김철준 (법무법인 다산 대표 변호사)
_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축 사

박 주 민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세월호 관련 집회, 민중총궐기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는 커녕, 목소리를 내려는 국민들에 대해 유례없는 강경한 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정부에 의해 대거 형사처벌을 받았고, 민중총궐기 때는 당시 69세 노인인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불법적인 직사살수에 의해 쓰러졌습니다. 백남기 농민은 쓰러진 지 28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모호하고 포괄적 의미의 ‘테러’ 개념을 상정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이 테러에 연루되었을 것이라 의심만 한다면, 국민을 누구든 감시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한 나라의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와 이들의 결집, 장기적 이슈화를 두려워합니다. 국민이 정부에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마치 민주화 이전의 독재시대로 퇴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13년 8월 내란음모사건이 발생하고,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체된 이후의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현실과 위기를 짚어보고자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우리 사회의 민주적 담론을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2016. 8. 24.
국회의원 박주민

내란음모사건 그리고 그 이후

- 민주적 입헌주의의 위기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2016년 한국: 법질서정치와 민주주의의 퇴행

2013년 8월 28일 (구)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전의원이 국가주요기간시설에 대한 테러를 계획하는 등 내란을 준비하였다는 국가정보원의 발표를 계기로 정점에 이른 이 땅의 공안정국은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등 헌정 사상 초유의 폭압정치를 단행하였다. 반공이데올로기가 직접적인 동력으로 작용하였던 지난날의 공안정국과는 달리 이 사건은 물론 그 배경에는 반공이데올로기가 그대로 작동하고 있었지만, 외형적으로는 테러와 내란음모라고 하는 또 다른 법담론조작기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지난 이명박정부의 “떼법”론 이래 이 정부에 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법질서정치(law and order politics)라는 통치술이 극단화되어 나타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사회질서라는 개념 속에 계급적 지배뿐 아니라 모든 정치적 억압의 전략들을 뭉텅그려 놓고 이를 보전하고 유지하는 것이 국법의 핵심요소이며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것처럼 가장한다.

세월호관련 집회와 민중총궐기 등에 대한 무차별적이며 폭력적인 진압작전은 그 단적인 사례가 된다. 과거 효순이 미선이 사건에서부터 촉발되어 미국산 쇠고기문제로 이어졌던 촛불집회-대중집회-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그 방안으로서의 특별법제정의 운동 그리고 시행령폐지운동으로까지 이어졌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형사처벌과 사찰과 강경진압작전으로 대응하였다.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광장을 빼앗아 버리고자 노력하였다. 이미 지난 정권에서 완전히 장악해 버린 언론사들을 통해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행해진 이러한 적나라한 폭력-그것은 불법 그 자체이다-은 시민들의 입을 막고 그들을 통치의 객체로 전략시키는 가장 저급한 통치술의 단면에 상당한다.

여기에 일부 시민들이 현 정권의 폭압적 통치에 저항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들을 살포하거나 배포하는 행위조차도 경범죄처벌법으로부터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법리를 왜곡 적용하면서 처벌일변도의 입가림 방식으로 일관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폭력적인 정부-경검찰-의

태도는 이미 이 나라가 민주주의이기를 포기한 흡스적 의미에서의 자연상태에 상당하는 야만의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법치의 기본이 헌법가치의 실천에 있다고 본다면 이 정부의 법치는 되려 헌법을 말살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셈이다.

테러방지법은 또 다른 법질서정치의 모습이다. 반국가단체의 위협이라는 반공국가의 전형이 아니라, 실체는 알 수 없지만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테러”사건들을 우리 사회에 대한 추상적 위협요소로 간주하고 이를 예방/방비하기 위하여 국가의 모든 정보력과 치안능력 심지어 국방능력까지 하나의 통제권 안에 포섭하여 강력한 무력을 창출하겠다는 발상이 이에 해당한다. 외형적으로는 이념중립적인, 그래서 수많은 이념과 문화적인 갈등에서 파생되는 테러라고 하는 폭력만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내면적으로는 반공국가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정원이라는, 현대국가체제에서 그 효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국가기구의 연명을 도모한다.

문제는 이러한 법질서정치는 본질적으로 위기를 과장하고 이를 예외상태로 내몰아감으로써 법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적으로 이끄는, 법왜곡의 극단을 구성한다는 점에 있다.¹⁾ 법질서 혹은 그것을 형성·유지함을 존재목적(raison d'Etat)으로 삼는 국가의 존재를 신성불가침의 것으로 규정하고 그 독립점에 자리잡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신성한 국가의무의 수행에 대한 유해요소 내지는 그것을 위해 희생되어야 하는 소모적 존재로 치환되어 버린다. 그러다보니 국가와 법질서에 대한 가장 작은 위협조차도 개인의 인권이나 민주적 의사결정의 과정의 그 어떤 것보다 큰 가치로 상정된다. 그래서 이 법질서정치는 권력을 장악한 자가 구사하는 가장 타락한 형태의 정치공학술 술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그것은 또한 그동안의 민주화의 성과들-비록 그것이 형식적·절차적 민주화에 불과하였다 하더라도-을 무위로 돌려 놓는 강력한 통치술이 된다. 형식적·절차적 민주화라는 것 자체가 국가과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즉, 대의제체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는 국법학적 틀 속에서 형성되었던 것인 만큼 여전히 국가우선적, 국가주의적 사고는 그 밑바닥에 깔려 있었고, 그 전제로서의 법질서는 이러한 민주화가 터잡아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²⁾

이러한 법질서정치 앞에서 개인은 모든 사회적·공동체적 관계로부터 단절시켜 파편화되고 고립된 개인으로 규정된다. 시민사회 혹은 공공영역은 스스로 국가의 한 축으로 기생하지 않는 한, 언제나 국가에 대한 적대개념으로 상정된다. 나아가 그렇게 박피당한 시민사회/공공영역의 부재로 인하여 개인은 오로지 개인 그 자체로서만 남게 된다. 연대나 공유, 혹은 참여와 배려라는 공동체적 미덕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은 신성한 존재로서의 국가에 대한 항구적인 위협인자이자 비판세력으로 자리잡게 되는 잠재력을 갖고 있기에 더 이상 신성국가와 양립할 수 없는, 그래서 반국가적 영역으로 상정되어 축출된다. 다른 한편, 개인들은 경제적·사회적으로 도태되지 않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부여받고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한 CEO가 되어야 살아갈 수 있게끔 강요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가는 자기가

1) 이에 관한 설명으로는 김한균, “법질서정치와 형사사법의 왜곡,” 민주법학, 제37호, 2008, 311-344면 참조.
2) 사실 이를 법학의 관점에서 부연해 보자면 이러한 법질서정치는 역으로 법질서의 유지,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사법 자체가 정치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따라서 그것이 정치화되어 버리는 현상을 야기하게 된다. 전계서, 314면 이하 참조. 아울러 반시장적 요소들을 통제함으로써 시장의 개방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또한 이러한 법질서정치의 한 축을 구성한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추구하는 통치체제를 그들의 행동준칙으로 내재화시키는 틀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민주화를 자랑하며 인권을 거론하던 우리 국가체제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여지없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현정부와 집권여당이 한 일은 지난 20년간 우리가 소중히 가꾸어 왔던 공공영역을 파괴하는 것뿐이었다. 소화기와 명박산성·근혜산성과 물대포로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을 빼앗고, 대통령비난 전단지 배포행위를 형사처벌하면서 명예훼손과 같은 폭력적인 법제를 휘두르며 거리의 정치, 말의 정치를 말살시키고자 한다. 어버이연합이나 일베와 같은 극우적 혐오폭력세력들은 물론, 최근에 와서 두드러지게 활용되고 있는 외부세력론이나 건국절주장 등은 그나마 있었던 정치적 대립각조차 해소해버리고 우리들을 신성국가의 충실한 신민으로 조작해내어 버린다. 사이버공간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날 수많은 공적 담론을 생산해 내며 대통령까지 만들어내었던 사이버공간을 이제 자본의 상업주의와 순간적 쾌락주의만이 판을 치는 곳으로 전락시키고 있다.³⁾

이 글은 이러한 선이해를 바탕으로 전술한 내란음모사건 이래 우리 민주주의의 퇴행성-그리고 바로 그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인권의 퇴행성- 현상을 읽어보고자 한다. 최근 우리의 민주주의가 연성쿠데타 방식으로 조금씩 허물어지는 그 주변에서 반동의 국면으로만 치달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되새겨 보고 이를 통해 우리의 입헌적 민주주의에 대한 정권의 침탈양상을 보다 구체화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하에서는 먼저 현시대에 있어서의 입헌적 민주주의의 의미와 그에 대한 반동적 침탈로서의 배제와 포섭의 통치술을 살펴 본 다음, 이 맥락 속에서 이 정부가 최근에 벌이고 있는 각종의 통치술들을 하나씩 살펴볼 것이다.

2 입헌적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의 의미

2.1. 당위: “입헌적 민주주의”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해산결정의 초입에서 제시한 민주적 입헌주의의 법리는 이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고대 민주주의의 부정적 인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는,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에 의한 전제적 지배를 배제하고 공동체 전체의 동등한 구성원들에 의한 통치를 이상으로 하는 공화주의 이념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이념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전자는 공민으로서 시민이 가지는 지위를 강조하고 이들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적 의사결정을 중시한다. 따라서 이것은 시민들의 정치적 동등성, 국민주권, 정치적 참여 등의 관념을 내포하고,

3) 하지만 그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적인 시장도 보수적인 자유도 아니다. 오로지 그들의 관심대상은 기득권의 재생산과 강화에만 한정되어 있다. 그들이 추진하는 감세정책은 물론 최근 경제위기를 빌미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토건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현상은, 최근의 개폐지론 파동이 그러하였듯이,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가진 자 혹은 있는 자에게만 고착되어 있을 뿐임을 잘 보여준다.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로 표현되고 있다.⁴⁾

여기서는 우리 헌법재판(어쩌면 우리 헌법학 전체를 걸쳐) 사상 처음으로 결정문에 “공화주의”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공동체 전체의 동등한 구성원들” 즉 정치적 동등성을 가진 공민으로서의 시민들의 자율적인 공적 의사결정에 의거한 통치가 우리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큰 틀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이런 결정을 통해 마치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혹은 그 헌법적 표현으로서의 법치주의가 서로 다른 차원에 속하는 듯 분리시키고 있으나 실질에 있어서는 양자는 동일한 것이 된다. “정치적 동등성”의 개념 자체가 타자의 권력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상태, 즉 타자에 의하여 지배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본다면, 그리고 그 상태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규율이 바로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이나 국가권력이 법률기속, 권력분립 등이라고 한다면 이 후자의 자유주의는 곧장 “정치적 동등성”을 보장하는 또다른 장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두고 “입헌적 민주주의”라고 표현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자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 어디서나 방해받지 않고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절대적인 자유가 되지는 못한다. 공동체 전체의 동등한 구성원들간의 공존과 공화를 유지하고 존중하는 한도내에서만 자유가 타당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어떠한 개인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혹은 한 개인이 자신의 자유를 향유한 결과 다른 개인을 지배하게 되는 현상에 발생하게 된다면 공동체는 구성원들간의 합의로써 그러한 자유를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 점은 최근 그 위력을 발하고 있는 공화주의의 틀을 재정비한 P. Pettit의 자유개념에서도 반복된다. 그에 의하면, 자유라는 것은 비지배로서의 자유(liberty as non-domination)를 의미한다. 그것은 I. Birkin의 분류처럼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주체가 할 수 있거나 될 수 있는 것을 마음대로 하거나 되게끔 하는 소극적 자유도,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지배자가 되는 적극적 자유도 아니다. 그것은 타자의 의지에 의존하지 않는 것, 타자의 의식적인 간섭에 의해 상처받지 아니하는 것, 타자의 자의적인 간섭에 휘둘리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공동체는 개인-시민-이 가지는 이러한 자유를 보장하고 보증해야 하는 책임을 진다.

근대국가의 본질적 개념요소인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는 이러한 공화적 통치체제에 가장 기본적인 틀을 이룬다. 그것은 국가(또는 공동체)를 하나의 인위적인 실체(corpus artificialis)로 구성하면서 개인적·인격적 지배로부터 국가(또는 공동체)를 독립시킨다. 그리고 국가(또는 공동체) 그 자체를 하나의 목적으로 삼아 '국가에의 의지(Wille zum Staat)'가 모든 권력을 정당화하는 기초로 전제한다. 그리고 이 의지를 현실적·구체적으로 발현하는 규범·성문의 헌법-으로 하여금 모든 국가권력을 계획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기속하도록 명령한다.⁵⁾

이러한 메타권력의 발현결과로서 나타나는 권력은 반드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확보하기

4) 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결정

5) 신우철, “근대 입헌주의의 성립사 연구: 입헌주의의 서구적 원형과 독일적 변용,” 중앙대학교 법학논문집, 제31집 제1호, 2007, 8면 참조

위한 권력”⁶⁾이 되어야 한다. 물론 이때의 자유와 권리는 반드시 자유주의의 그것을 의미할 필요는 없다. 논자에 따라서는 공화주의식의 비지배로서의 자유의 관념 역시 주효하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자유는 그 자체 민주주의와 접목된다. 그것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자유주의적 개념)이자 자신의 공동체적 생활을 위해 스스로를 개발하고 시민으로서의 각성을 나아갈 수 있는 힘(공화주의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입헌주의의 관념을 내세운 것은 바로 입헌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이런 친연성에 착안하였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⁷⁾

2.2. 현실: 반인권·반법치의 만연

하지만 2016년 현재 우리의 상황은 헌법재판소의 저 결정 이상으로 배반적이다. 그와 정반대의 방향에서 반입헌적, 반민주적인 통치술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공국가 혹은 48년 체제가 부과한 “빨갱이”라는 낙인 혹은 최근에 등장한 ‘종북담론’은 신자유주의의 도래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통치술을 이루었다가 이제는 그 담론 자체가 법질서정치의 전제로서의 위기로 상정되는 사태에까지 이른다. 일반적인 혐오발언이 사회적·문화적 산물이라고 한다면, 이 빨갱이 혹은 종북담론은 정치적 기획에 의해 만들어진 가장 적나라한 형태의 국가폭력을 구성하는 한편, 그 종북담론을 하나의 기정사실 내지는 기성사실로 고정시키면서 바로 이런 종북담론이 있다는 것이 국가에 대한 위기가 존재하는 징표로 읽히기도 한다는 것이다.⁸⁾

실제 87년체제의 “민주화”가 제대로 축출해 내지 못한 48년체제의 반공국가적 억압은 정치의 영역을 현저히 위축시켰다. 아직도 우리 정치에서 노동자의 이익이나 진보의 주장은 제자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 항시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모습은 이를 가리킨다. 심지어 환경이나 평화의 문제까지도 정치의 경계선상에서 한계적 존재가 되어 배회할 따름이다. 그리고 이 모든 억압은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방향으로 작동하거나 또는 표현의 자유 그 자체를 동원한 배제와 배척의 통치술로 현현한다.

실제 우리의 민주화의 주동력은 상업화를 주도한 부르조아지(배링턴 무어)가 아니라 민주화운동이었으며, 따라서 현재의 역사발전은 “운동에 의한 민주화”라고 규정하고 있는 최장집교수의 말은 그대로 타당하다. 지난 군사정권은 정경유착등 권위주의적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며 재벌이라고 하는 소수집단에 성장의 성과를 오롯이 배당해버리는 한편, 이러한 개발독재의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관료적 권위주의의 체제를 구축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위주의적 체제를 통해 노동을 통제하며 권력과 언론을 유착시켜 언론은 단순한 권력홍보기관 내지는 국민여론‘선도’기관 정도에 한정시켜 버렸다.⁹⁾ 한

6)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8, 7면.

7) 여기서 입헌주의는 이런 자유지상주의적 자유개념을 통제하는 법원리로 존재한다. 그것은 자의적 권력-그것이 개인의 것이든 집단 혹은 국가의 것이든 관계없이-에 대한 안티테제로서의 권력통제규범이라는 성격을 메타권력으로서의 헌법에 부여한다. 즉, 시민적 덕성의 함양을 통해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주인이 되어야 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공동선을 실천하는 주체성을 보장할 수 있는 권력으로서 헌법의 위상이 거론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에서, 또 오직 이 점에서만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은 나름의 헌법적 의미를 가진다.

8) 이는 일종의 “정치적 혐오발언”에 해당한다. 실제 이런 혐오발언은 이 때문에 일반적인 혐오발언의 범위에 더하여 국가개입이라는 혐의를 지게 된다.

9)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후마니타스, 2003, 86-94면.

국의 민주화는 이렇게 됨으로써 지체되었고, 바로 이렇게 됨으로써 그 불씨가 촉발되었다.

문제는 이런 지나간 역사가 여전히 오늘의 현재사로 부활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상징되는 친기업정책은 엄밀히 보아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편승하기 위함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 실질에 있어서는 특정 기업 혹은 재벌에 대한 자본축적의 기회를 독점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전술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지난 정부의 초기부터 제시되었고 지금의 정부도 본질적으로는 별차이 없이 고수하고 있는 경제정책들-고환율정책이나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처방과는 전혀 무관한 듯이 보이는 상속·증여세·법인세 중심의 감세정책, 4대강사업 또는 부동산경기부양정책 등의 토건국가 경향, 수도권규제완화조치와 지역균형개발정책의 후퇴, 금산분리정책의 완화, 의료민영화 정책, 파견제도 확대 및 해고자유화조치, 의료서비스·철도·공항·수도·전기 등 공공사업의 민영화시도 등-의 기조는 과거 권위주의 군사정권의 경제정책과 크게 달라진 바 없어 보인다. 오히려 과거의 군사정권은 스스로가 경제정책의 주도자였음에 반하여 현재의 정권은 재벌을 중심으로 한 자본권력의 외곽에 자리잡은 ‘위원회’ 정도의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만이 부각될 뿐이다.

더불어 민주화의 성과로 제기되었던 참여민주주의의 틀조차도 지난 정권 이래 국가과정에 대한 시민적 참여와 그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방식으로 제도화되지 못하였다. 그것은 참여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관료주의·전문가주의에 포섭되어 버렸다. 국가기구의 의사결정과정에 비전문가로서의 시민들이 별다른 대표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들러리서는, 일종의 정당화기구로 편입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환언하자면 마치 87년의 민주화 동력이 기성 정당과 기성 정치인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권정치의 승리로 귀결되듯이, 지난 “참여정부”의 참여민주주의는 관료들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생산하고 전달하는 전문가집단, 그리고 이들을 뒷받침하는 자본권력의 복합체가 형성되는 것을 도왔을 따름이고 그 결과 시민에 의한 행정이 아니라 관료와 전문가와 자본의 3자연합체의 승리를 만들어 내었을 뿐이다.¹⁰⁾

이 과정에서 노동의 유연화를 빌미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차별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억압을 자행하는 현상은 과거 군사정권시절의 그것과는 다른, 그러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노동탄압에 해당한다. 특히 법원을 중심으로 일응 전형적인 노동법체계가 구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이나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하거나 공장을 폐쇄하는 수법으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감행하는 작업장 또는 노조설립후 노조간부를 해고하거나 위협하는 작업장 등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부가 방관하는 태도를 취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노동법을 개정하거나 혹은 대법원의 구성 자체를 보수화함으로써 노동법을 민법의 식민지로 포획해 버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두드러진 과거회귀의 현상은 민주주의의 동력이 되었던 “운동”에 대한 억압-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서 극에 이른다. 최근 현 정권의 폭력이 이 의사소통의 과정을 타겟으로 삼아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언론을 장악하고 특히 사이버공간에서의 의사소통에 대해 깊숙이 개입하

10) 론스타사건의 경우는 그 대표적인 예이며, 김&장 등 대형로펌이 전직관료들을 고문등으로 고용하여 자본과 관료들을 결합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은 그의 또 다른 양상이다.

고 또 통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은 이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운동”은 기본적으로 신념과 이념의 전 파수단으로서의 표현행위-의사소통행위-를 그 전제로 하며, 따라서 따라서 운동에 의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중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제하는 것, 즉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3. 배제와 억압의 통치술

3.1. “자유민주주의”의 복화술: 반공국가

우리의 헌정사는 이러한 통치술의 역사를 잘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의 예외상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담론을 타고 나타난다. 그것은 전혀 실체를 갖지 못한 채 오로지 적과 우군의 경계를 설정하는 도구로서의 모습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차용하여 내린 개념 -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는 정치 질서 - 은 나름의 의미를 가지지만, 이 또한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라는 개념이 추가됨으로써 그나마의 명확성조차 상실해 버리고 만다.¹¹⁾ 그것은 우리 헌정사로부터 상당히 유리된 개념들일 따름이다.

해방 직후 우리의 국가형성(nation building)과정은 정부형성(state building)을 둘러싼 권력싸움에 압도당하면서 수많은 이념들의 대립이 지극히 짧은 기간동안의 폭력에 의하여 일거에 정리되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우리 사회는 좌익에서부터 민족주의, 보수우익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치이념들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념의 투쟁과 합의의 과정을 거쳐 국민-국가의 경계를 설정하고 이 틀 속에서 견고한 헌법이념을 구성해지 못 하였다. 그 전에 미군정과 그의 후원을 받는 정치집단에 의해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 반공과 자유민주주의라는 두 축이 선택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형성과정의 종료 되어 버렸던 것이다.

문제는 이 “자유민주주의”는 전혀 실체가 없는 것 혹은 반공이라는 허사(虛辭)의 또 다른 표현으로만 상정되었다¹²⁾는 점이다. 그것은 미군정이 외쳤던 “공산진영과의 전쟁”이라는 의미 이상은 갖지 못 하였다. 그것은 미군정과 보수우익진영이 합의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이었을 뿐이며, 해방공간을 통하여 좌익세력들을 폭력적으로 제거하고 난 후 잔존하는 세력들의 이념적 토대를 총칭하는 외피이자 집권세력들이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허위의식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그것은 우익진영이 정적들을 제거하거나 견제하기 위한 최적의 억압수단으로 오남용되었을 따름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도 우리 국가형성과정의 파행성에서 연유한다. 근대 국민국가들은 활성화된 시민사회가 먼저 존재하고 그 속에서 정치권력들이 구성되고 그 결과 국가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4·3사건이나 여순반란사건 등 일련의 폭압적 상황을 거쳐 미군정에 의하여 국가가 먼저 만들어

11)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국가보안법 제7조에 관한 위헌심판.

12) 박찬표,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360쪽 이하 참조.

져 외삽되고 이에 의하여 정치권력이 규정된 다음에야 그 정치권력이 대중을 동원하는 체제로서 시민 사회가 구성되었다. 제헌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5·10선거의 선거권이 사실상 38선이남 거주자에게만 한정된 것이라든지, 국가보안법이 법률 제3호로 제정되면서 가치없는 이념전쟁을 벌였다는 것은 이를 대변한다.¹³⁾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헌법개정의 초점은 권력과 시민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근본문제보다는 권력을 누가 어떻게 관장하는가 하는 이슈에만 맞추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물론 그 기본구조로서의 “민주주의”조차 그 구체적인 실체를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소위 48년체제 혹은 반공국가체제가 형성되는 것은 이 지점에서이다. 유신헌법의 전문에서 처음 명문화된 ‘자유민주주의’라는 담론은 항상 반공이라는 틀 속에서 규정되며 냉전체제에서 국가의 이념적 기초와 실천은 헌법이 아니라 반공법 내지는 국가보안법에서 구체화되는 구조가 이루어진 것이다.¹⁴⁾ 그것은 “‘친일파(처단)정국’을 ‘반공정국’으로 상쇄시키고자 했던의 국면”¹⁵⁾이라는 설명에서도 잘 나타나듯(정치적) 폭력을 법의 영역으로 포섭하고 이를 통해 일상화된 예외상태를 법의 형식으로 포장하였다. 한마디로 국가내의 모든 규범적 가치판단의 기준은 헌법이 아니라 냉전체제에서의 대결구조였고 민주주의든 자유주의든 모든 이념적 지향은 그 한계 안에서만 타당하였고 또 그 한도 안에서만 허용되었다. 더구나 냉전체제가 국내화하는 과정에서 그에 반하는 이념이나 세력, 집단들은 폭력적·물리적으로 정치과정은 물론 시민사회의 영역으로부터도 배제되었을 뿐 아니라 아예 그 국민으로서의 자격까지도 부정당하는 국민/비(費)국민의 이분법적 체제가 제도화되었다.¹⁶⁾

이렇게 해방정국에서 규정되었던 ‘비국민’은 이후의 정치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된다. 전쟁국가체제가 지속되면서 국민과 비국민을 구분하고 대립시키는 예외상태가 일상적으로 재현되었기 때문이다.¹⁷⁾ 그래서 “공산주의자” “좌익” “사회주의자” 등의 명칭에서부터 “빨갱이”라는 속칭으로 전이되는, 그리고 최근에는 “종북좌파”라는 무개념의 낙인으로 확장되는 적대적 대립관계는 우리 정치사에서 상소가 되어 버린다. 누구든지 체제에 반대하거나 순응하지 않는 사람은 체제권력의 주체 혹은 그에 뇌화부동하는 자들로부터 “빨갱이”로 규정되며 바로 그 순간 그는 비국민이 되어 속칭되거나 즉결처형 당하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제주4·3사건에서부터 국민보도연맹사건, 거창민간인학살사건 등의 학살 대상이 되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처단하든 그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는 전혀 없었다. 재판절차에서조차 그들은 시민권을 누리지 못하였다. 오직 존재하는 것은 초법적인 폭력, 즉 적나라한 국가폭력만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별거벗은 사람’ 즉 homo sacer¹⁸⁾로 전락해 있는 것이다.

13) 김동춘의 “전쟁국가”라는 성격규정은 이러한 폭력적 권력투쟁의 역사를 대변한다. 전쟁국가라는 예외상태라 법화(法化)과정에서 대한 분석으로는 강성현, “한국 국가 형성기 ‘예외상태 상례’의 법적 구조-국가보안법(1948·1949·1950)과 계엄법(1949)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94집, 2012, 87-128쪽 참조

14)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후마니타스, 2005), 77쪽.

15) 강성현, 위의 글, 94쪽.

16) 박찬표, 한국의 48년체제(후마니타스, 2010), 31쪽.

17)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군부가 반공을 내세우자 시민들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첫 번째의 조치로서 시민증부터 발급받았던 것이다.”라는 보도는 이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시민증은 국민/비국민의 구분점이자 동시에 자신이 빨갱이나 간첩·공비가 아닌 ‘양민’이라는 증표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이 모든 통치술의 주체는 이승만 정권과 그 하위권력으로서의 공안세력-국정원, 공안검찰·경찰 등-이었고 집권여당이나 관료체제-사법관료는 물론 이에 포함된다-은 이의 대행자로 기생하였다. 이들은 법률의 안과 바깥에 모두 존재하면서 법규범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동시에 새로운 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나아가 “적화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존재를 거론하며 언제든지 예외상태를 선언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일상으로서의 예외상태를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연유로 인하여 48년체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유효하게 군림한다. 그것은 권력의 폭력에 의하여 구성되고 존속하였을 뿐 아니라, 일상적인 훈육으로 인하여 이렇게 손쉽게 체제에 적응해 버린 우리 국민들에 의해 너무도 지속가능한 것으로 고착되어 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결과로서 “남는 것은 아노미 지대 뿐이며, 거기서는 어떤 법률적 가면도 쓰지 않은 폭력이 지배”¹⁹⁾하는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는 것이다.

3.2. 대국민 심리전: 배제와 적대의 통치술

실제 국정원이 마련한 이석기 전의원 등의 내란음모수사사건의 기본적인 논리틀은 그리 낯선 것이 아니었다. 48년 반공체제의 상소(常素)인 북한을 반국가단체이자 주적으로 전제한 다음,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행태들을 그와 연관시키면서 범죄화시키는 것은 국정원의 일반적인 대공수사의 기법이다. 하지만 이번의 내란음모수사사건은 그런 기법에다 ‘종북’의 관념을 현실적인 (내란음모)세력으로 가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동안의 공안사건이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수준에서만 반공을 선언하고 규정하였다면, 이 사건은 내란 혹은 체제전복의 위험을 구체적인 행동-엄밀히 말하자면 피의자들의 발언이 그 대부분이었다-으로 가시화하고 이를 내란이라는 일반형사법의 죄목으로 풀어내면서 통합진보당이라는 하나의 현실정치세력으로 묶어내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한마디로 종래의 반공담론에다 ‘국가주요기간시설에 대한 테러’라고 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위협요소를 삽입하여 이 반공논리와 법질서정치라고 하는 통치술을 결합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아울러 이 사건은 통합진보당이라는 공식적이고 현실적인 정치력을 가진 정당기구를 동원한다. 과거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은 채 은닉과 은폐로 일관하던, 그래서 우리의 일상과는 다른 생활을 하였던 종래의 ‘빨갱이’ 혹은 ‘간첩들’과는 달리 이 사건의 피의자들은 정당이라는 공적 조직으로 국회에까지 진출한 공식적 세력이며 무수한 당원들을 거느리고 매 순간 언론을 통해 대중들의 삶 속으로 파고드는,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동화되어 있는 거대한 빨갱이 집단으로 특화한 것이다.

혹은 내란음모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가공, 전파되고 있는 테러의 위협은 이러한 위기전략을 가중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테러방지법상의 테러-이는 UN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가 우리의 위협이 되는지는 전혀 판단하지 않은 채 오로지 테러위험인물이라는 추상적인 용어를 규정해 놓고 이로써 우리 국가에는 테러가 상존하는 듯한 모습을 구성한다. 정부를 참칭하고 국토를 참절하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존재-이는 테러단체가 아니다-가 상존하는 한, 정부는 언제든지 이 테러위험인물이라는 “테러”방지대상을

18) G. 아감벤,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새물결, 2008), 155-160쪽 참조

19) Agamben, 115쪽.

창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예의 내란음모사건은 이 과정에서 터져나왔다. 그것은 기존의 반공체제와 신자유주의적 억압체제를 결합하는 중요한 고리로써 테러의 관념을 끌고 온다. 그리고 이 점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였던 공포정치를 대중의 눈앞에 가시화하는데 성공하였다. 한마디로 이석기내란음모세력 = 통합진보당 (그리고 더 나아가 진보세력 혹은 반대세)이라는 도식을 야물차게 만들어낸 것이다. 실제 이러한 가시화작업을 통해 그들을 여타의 “진보”세력과 분리·배제시켜 일종의 homo sacer와 같은 존재로 타자화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특이성을 가진다.²⁰⁾ 그들은, 좀비나 지구를 침략한 외계인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죽여도 정당화되는 부정한 존재이자, 동시에 그들의 존재로 인하여 그 반대편에 있는 신-절대적 존재로서의 국가-의 법이 가지는 정당성을 신성화시킨다. 아울러 이러한 절대적 악의 존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새롭게 재생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공포를 제기하면서 죽음의 권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의 댓가를 치르게 하는 존재²¹⁾로 재구성된다. ‘알짜배기 종북’을 선언함으로써 그 상대방에 있는 국정원에 주권적 권력을 부여할 뿐 아니라, ‘주변부적인 종북’-진보-들에게 스스로를 그들과 분리시키고 그들의 생명성을 ‘부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 과정을 통하여 그들은 시민사회 전체를 “수용소”화 한다. 헌법도 민주주의도 아닌, 그들의 법이 곧장 주권적 권력으로 변이되면서 모든 시민들의 일상을 통제하는 반헌법적 상태를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양상들은 가장 저급한 통치술의 전형을 이룬다. 반공주의라는 공허한 이념을 최근의 민주화시대에 맞추어 좌파, 진보, 반대세 등의 형태로 재가공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가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구해낸다는 허위의 담론들을 생산한다. 나아가 그러한 담론의 집행을 권력으로 담보하는 한편 이러한 사건을 통해 반공주의를 새로이 강화한다. 한마디로 공작정치의 전형이 여기서 표출되는 것이다. 미완의, 혹은 변질되어 버리고 만 87년체제의 한계를 틈 타, 또 다시 반체제의 강권력이 꿈틀거리도록 추동하는 “그 일그러진 초상”을 마치 자복하는 듯 한 모습으로 적나라하게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강제해산심판사건이나 이를 빌미로 통합진보당에 가해지는 새누리당과 거대야당의 합작공격은 내란음모사건의 경우와 함께 우리 사회의 정치공간을 가장 협애한 지점으로 몰아넣는, 새로운 형태의 탈정치화전략이 된다. 그것은 소위 ‘진보진영’을 분리시키고 그 분파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배제하는 전략에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더 나아가 정치이념의 지평에서 배제당한 분파(예컨대 통합진보당)와 공간적 유사성이 가장 강한 분파부터 차례로 제거하면서 살아남기 원하는 ‘진보진영’은 순차시킴을 한다고 하는 연속된 전략으로 진행된다. 하나를 배제함으로써 다른 분파를 견제하고 그 결과 전체로서의 진보진영의 활동공간을 최소한으로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만큼 정치의 가능성이 줄어들도록 만든다. 실제, 당시의 새정치민주연합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공격에 합세한 가장 큰 이유는 “종북”논란에서 자유롭고자 한 것보다는 과거 진보당사건에서 보수야당이 그러했듯이 야당으로서의 활동공간을 독점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²²⁾ 그리고 이 과정에

20) 진중권 교수의 발언들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21) G. 아감벤,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155쪽 이하.

22) 지금 현재도 더민주당은 사드 배치에 관하여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한다. 중도수렴의 정치를 말하면서도 그 중도가 좌우익을 아우르는 중도라기 보다는 우익 속에서의 개혁과 수구의 중도로만 편향되어 있는 것이다.

서 마치 독과점체제가 구축되면 그 만큼 시장에서의 선택지가 줄어들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치영역-그리고 표현의 자유 영역-은 보다 더 보수인 진영과 보다 덜 보수인 진영 간의 경합 정도로 위축되는 양상으로 구성되어 버리게 된다.

3.3. 신자유주의와 정치적 배제전략

이러한 정치적 배제전략우리 사회에 부유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와도 유효하게 결합한다. 종북담론은 오로지 정치적 반대자만 비체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자본의 자유로운 증식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만능통치의 폭력으로 작용한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에 대한 국가규제를 완화·해소하고 경제주체들의 자율과 선택을 중시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탄력성을 확보함으로써 경쟁력과 생산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을 민영화(보다 정확히는 사유화)하는 한편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정책경향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를 다른 관점에서 정리하면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로 이어지며 이를 위해 시장을 시민사회와 분리시키고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전자를 위해 후자를 통제하는 전략을 취한다.²³⁾

실제 신자유주의의 작동방식은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드러난다.²⁴⁾ ① 협박전술, ② 국가기구와의 네트워크 활용, ③ 세력관계의 물질적 응축을 통한 자산가·계급권력·정치의 구조적 결합 혹은 ‘복합질서’의 구축 등.

협박전술은 우리나라와 같은 발전국가의 경우 매우 유효한 전략으로 등장한다. 고용과 투자의 주체로서의 기업은 일종의 자본파업이나 자본이탈의 협박을 통하여 국가를 통제하고자 시도할 수 있다. 또한 푸코가 말하는 통치술의 재구조화는 여기서 이루어진다. 즉 위험-이는 시장에서의 무한경쟁으로부터 도태되는 위험을 포함한다-을 강조하며 이로부터 안전을 도모하는 가운데 그 안전관리의 책임을 책임있고 합리적인 개인으로 전이시키는 생명관리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²⁵⁾ 최근 급격하게 대두되고 있는 민간보험영역의 확장은 이 때문이다. 전통적인 사회복지가 축소되며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생활기반이 불안정하게 되는 현상을 틈타 신자유주의는 생활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제반의 불안·위험요소들을 상품화하여 보험과 같은 상품으로 전환한다. “생활의 영역에서 투자와 리스크의 사사화(개인화)와 상품화”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²⁶⁾

둘째의 방식은 관료를 중심으로 한 공적 의사결정과정을 협치라는 이름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사유화하는 형태로 드러난다. 정치체계의 탈정치화라고 규정할 수 있는 이 현상은 국가의 공공자산을 사적 부문으로 이전함으로써 공적 가치가 사적 투기의 대상으로 전략해 버린다. 전방위로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전관예우의 관행은 그 대표적인 예로 공적 의사결정과정을 사유화하는 최악의 상태를 만들고

23) 위의 글, 248쪽. 그리고 이러한 위험의 전가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 민족, 가족 등의 가치를 강조하는 사상적 보수주의를 내세우는”전략을 실시한다.

24) 지주형, “신자유주의적 경제권력의 해체와 경제민주주의: 국가론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2012), 특히 74-75쪽.

25) 홍태영, 62쪽.

26) 지주형, “신자유주의의 국가 - 전략관계론적 형태 분석,” 경제와사회, 2015.6. 360-406면. 390면 참조.

있다는 점에서 그 두드러진 예가 된다.²⁷⁾ 특히 전직 고위공무원들을 고문이라는 직위로 무차별 고용하고 있는 대형법무법인은 이러한 사유화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벌의 수직승계과정에서 투자와 경영의 경험이 없는 재벌2,3세들이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안정적인 투자대상을 국공영기업의 사사화 형식을 통해 추구하는 현상은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왜곡된 모습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셋째의 방식은 제도의 변형을 통한 자본이익의 극대화방식이다. 권력의 중심이 의회로부터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하는 관료적 행정부로 이전되며 탈정치화를 통한 시민사회의 대의체제를 해소하며 “정치적 사법화(judicialization)와 민주주의의 형식화”에 의한 자본활동공간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국제수준에서도 FTA라든가 혹은 투자자-국가 직접 소송제(ISD) 등도 그 전략의 주요요소를 이룬다.²⁸⁾ 이런 과정을 통해 미시적인 정권교체만으로 자본의 욕망을 좌절시키지 못하는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²⁹⁾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전략은 이미 우리 국가가 경험하였던 개발독재식의 성장전략과 결합하여 작동한다. 폭력적 노동수탈을 가능하게 만든 강력한 노동통제와 불균형성장정책에 의한 수탈적 시장체제의 구축, 재정과 외환정책 조작을 통한 과도한 이윤수준의 보장, 대외신용 보증 및 국내시장 수탈 방식에 의한 수출기업의 보호 등은 후자의 대표적인 예이다. 여기에 1997년 소위 IMF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김대중정부에 의해 진행되었던 4대개혁 전략³⁰⁾과 그에 이은 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노선은 이러한 상황에 더하여 그나마 자본에 대하여 가해질 수 있었던 국가적 통제 가능성조차도 말소시켜 버렸다. 오히려 국가와 자본이 종래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공생의 관계 내지는 공모의 관계로 들어서게 만들었다. 국민국가적 통치능력을 상당부분 양보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든 한미FTA라든가 공익의 실현이라는 공법적 관심을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에 양보해 버리고 만 규제완화정책 등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되었고, 참여민주주의라는 명분을 통해 서서히 유입한 관료정치·전문가정치의 관행은 기업의 이익이 그대로 공공부문에 침투하는 통로를 만들었다.

여기에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가속된 기업친화적·시장친화적 정책들은 그나마 시장을 통제하던 공법적 규율까지도 내팽개치는 양상을 만들었다. 재벌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의 폐지,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인하(소위 부자감세)와 그로 인한 재정적자를 서민가계로 전가하려는 시도, 공기업의 사유화, 의료·교육등 사회필수적 서비스에 대한 시장체제의 도입 시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에 대한 국가적 개입의 가능성을 해체해 버렸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화”의 부담은 온전히 시민사회의 영역으로 전가되었다.³¹⁾ 노동의 유연화가 만든 노동의 질적·양적 악화 현상은 가장 두드러진 피해이다. 복지과 사회안

27) 이에 관하여는 한상희, “헌법문제로서의 전관예우 방지: 공적 권력의 사유화와 그 헌법문제,” 헌법학연구 제 17권 제4호(한국헌법학회, 2011), 91-134쪽 참조

28) 지주형, 앞의 글, 74쪽.

29) 실제 신자유주의국가는 복지영역에서는 ①사회복지를 근로연계복지로 전환시키며, ②고용과 임금의 수량적 유연화를 추구하며, ③폭력·감시·처벌을 사회질서의 유지수단으로 보다 많이 사용하며(소위 법질서정치(law and order politics)), ④ 생활영역에서의 투자와 리스크의 사사화와 상품화를 추구한다.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지주형, 위의 글 참조

30) 그 중에서도 금융개혁정책은 제5공화국정권에서 국제그룹의 해체를 가능하게 하였던 관치금융의 체제를 해소 시킴으로써 국가가 과대성장한 재벌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전망의 해소 혹은 그의 사유화에 따른 질적·양적 수준의 저하는 자본의 이익을 위하여 희생되어야 하는 또 다른 피해부분이다. 거듭되는 부동산경기부양정책이 양산한 하우스 푸어의 현상이라든가, 대형자본에 의한 골목시장·재래시장의 침식 현상은 대기업의 천문학적 규모의 순이익이 어떻게 조성된 것인지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공유재의 종획(enclosure of commons)”현상이 나타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계급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³²⁾

이렇게 기층민들의 기본적인 삶이 부정되고 경제적 소수자에 대한 국가적 책무가 회피되는 국면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저항은 강력한 경찰력에 의해 관리되고 또 통제된다. 용산참사사건이나 밀양의 송전탑사건, 쌍용자동차사태 등에서의 국가폭력이나, 유성기업·SJM·만도 등에서 나타났던 용역경비업체에 의한 ‘사적’ 폭력 현상 등은 국가가 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골적인 청부폭력업자로 작동할 수도 있음을 자인한 것이 된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의 현상이 폭넓게 그리고 공공연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현실에서 경찰은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억압하는 ‘위기관리자’일 뿐이다. 경찰과 경찰권집행의 현장은 국가와 개인간의 밀접한 협조와 공조가 공존하는 협력의 장이 아니라 노동자 등 사회하층계급에 대한 국가권력의 인권침해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결의 장일 뿐이다.³³⁾

문제는 이러한 국가와 자본의 유착현상은 또 다시 48년체제의 반공이데올로기가 만들어 놓은 정치적 배제전략에 의해 엄폐되거나 은폐된다는 점에 있다. 우리 검찰의 공안부의 관할사건이 대공·간첩사건, 선거사건, 노동사건이라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본이 행사하는 폭력에 대한 국가적 대응은 “빨갱이”나 “종북좌파”의 담론에서 나오는 비국민화전략이다. 상술한 신자유주의의 협박전략은 이에 상응한다. 개인을 공동체로부터 떼어 놓고 이렇게 단자화된 개인을 유동성(liquidity)이라는 명분으로 한없이 불안정한 삶으로 몰아 넣는다. 개인은 “자기 자신의 경영자”여야 한다는 단언은 다른 면에서 보자면 그 적자생존의 경쟁체제에서 경영자로서의 적응을 하지 못하는 순간 그 어떠한 보호(혹은 보험)의 보장도 받지 못한 채 그대로 도태되고 만다는 위협이 그것이다. 여기서 정치적 배제전략은 아주 의미심장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자신이 시장에서 유효하게 행위하는 시장주체(혹은 자기 자신의 경영자)임을 과시하는 것임과 동시에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털어버리고 결단코 도태되지 아니하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인 것이다.

31) 바로 이 점에서 신자유주의의 양면성이 드러난다. 지주형에 의하면, 이데올로기로서의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 경쟁적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 등을 위하여 시장을 비롯한 모든 시민사회영역으로부터의 국가의 후퇴를 요구한다. 하지만, 현실적 질서로서의 신자유주의체제에서는 자산소유자의 자유, 그에 따른 금융화 및 독과점 질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한다고 한다. 지주형, 위의 글, 369면.

32) 이광일,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경쟁국가의 계보와 현재,” 문화과학 2008 여름, 48쪽.

33) 이계수,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경찰국가의 강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1년 심포지움 <신자유주의와 민주법학>, 2001.11.24. 출처: http://delsa.or.kr/xe/index.php?document_srl=5635&mid=sympo

결국 배제전략은 경제적 구획화작업과 등치된다. 진보와 좌익을 동일시하고, 노동쟁의와 국가변란을 등치시키는 방식이나 모든 국민을 좌파와 비좌파로 구획하는 방식은 87년체제에 들어와 더욱 심화되어 버린 지역주의 전략과 결합하면서 20 대 80의 불균형을 1 대 99로 고착시키고자 하는 자본의 구획방식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간적 분열정책은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의 문제 혹은 민생이나 취업의 문제, 환경과 교육의 문제등에까지 작용하여 시민들의 쟁론을 차단하는 또 다른 목적에 기여한다.³⁴⁾ 시민사회를 탈정치화시키고 국회의 대의기능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민주주의 자체를 형식적인 것으로 만들고 그 속에서 국민의 정치가 아니라 자본권력과 정치권력의 담합에 의한 과두정체를 구성해 내고자 하는 것이다.³⁵⁾

내란음모사건과 그 연장선상에 있는 통합진보당의 강제해산, 그리고 그 이후 하나의 대세가 되어 버린 정치·사회분야의 급격한 우경화 현상은 이런 배제전략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더민주당의 경우 정부·여당의 경제살리기 5대 입법에 반대하고 나서기는 하지만, 그들의 역할은 기껏해야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거부권정당의 국한된다. 저 신자유주의의 방벽을 뚫고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혹은 민생·환경 등의 진보적인 전략을 구사하기에는 그 능력과 의지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3.4. 담론정치의 침범: 권언유착

그동안 이런 통치술-대국민 심리전-을 구현하는 장치로는 몇 가지의 것들이 있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권언유착을 통한 언론기관의 종속화였다. 언론의 소유구조를 변형하여 종합편성방송 즉 소위 종편을 통해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게 하는 장치가 그 한 사례라고 한다면, 언론기관에 대한 정부의 인사개입권한을 이용하여 지상파 방송의 관리권 자체를 권력의 편으로 포섭하는 것은 또 다른 사례를 이룬다. 여기에 보수적인 신문매체들과 권력연합을 구성함으로써 지상파-종편-신문이라는 전방위의 매체통제를 가능케 하는 체제를 구성하였다.

사이버공간에 대한 통제는 새로이 등장하는 통치장치가 된다. 국정원이나 사이버사령부에 의한 댓글작업은 가장 초보적인 대응전략이었을 따름이다. 실제 정부의 의지는 독립적이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하부기관으로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정부·여당이 장악하면서 뉴미디어까지 통제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하는데 있다. 여기에 사이버 의사소통의 가장 주요한 플랫폼인 주요포털은 그 기업적·자본적 이해

34)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의 퇴조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은 또 다른 우려점을 낳는다. 국가주의가 여전히 주효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장중심적 구조가 변화를 일으키게 될 때 자칫 과도성장국가의 폐해들이 재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작은 시사점은 유철규, “경제와 관료: 박근혜 정부의 경제성장정책, 다시 국가주도인가,” 황해문화, 2013 여름호, 2013, 50-65쪽 참조.

35) 여기서 과도한 정치적 양극화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한 R. Dworkin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그에 의하면 과도한 정치적 양극화 아래서는 공적 논쟁이 성립되기 어렵고 따라서 가치있는 민주주의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 R. Dworkin, 흥한별 역,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문학과지성사, 2012.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정치적 양극화는 정치분화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보수화의 국면에서 일방이 타방을 배제하고 배척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의 처방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진영논리”로 폄하되는 이 현상은 엄밀히 보자면 배제의 권력에 대한 항의와 저항의 대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내재하는 장애요인이라기 보다는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먼저 극복해야 할 선행조건이 되어 있는 셈이다.

관계 속에서 정부와 연합체를 구성하기에 충분한 동기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나마 권력에서 떨어진 거리에서 움직이던 인터넷신문을 통제하기 위하여 신문법상의 인터넷신문의 요건을 상주직원 3인에서 5인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시행령개정안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³⁶⁾

문제는 이러한 권언유착이 어떠한 정치적 이슈에 대한 자기증폭의 시스템을 갖추고 여론을 철저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 존재한다. 어떠한 정치의제가 존재할 때, 지상파-종편-보수신문의 세 축이 서로 증폭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타 매체에서 제기된 의제설정을 기정사실화한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개인적 의혹이나 논평의 수준에서 제기되었던 발언을 다른 매체에서 받아서 다시 보도하면서 그 파장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또다른 논평이나 의혹을 부가하여 보다 큰 보도가치로 상승시키는, 일종의 작전주 돌리기와 같은 행태가 이들의 3자연합을 통해 구조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현 정부가 수행하는 담론중심의 통치술은 엄청난 위력을 발생하게 된다.

4. 사례분석

4.1. 대국민 심리전과 어버이연합

어버이연합의 사태들³⁷⁾은 가장 주변부에서 발생하는 통치술이면서도 이상에서 제시한 기본구도를 가장 충실히 이행하는 통치수단이다. 이 어버이연합의 주된 활동무대는 광장이나 길거리이다. 종래 권력을 갖지 못한 대중들의 정치화공간이었던 이 부분에 어버이연합이 진출하여 그들의 주장을 가로막고 나서 는 한편, 현 정권이 원하는 대항담론들을 만들어내고 이를 보수언론연합을 통해 증폭하여 마치 구체적인 정치적 대립이나 갈등이 존재하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내고 이를 빌미로 또 하나의 법질서 정치가 통용될 수 있도록 한다.

어버이연합이 수행하는 주요 기능은 물론 시민사회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집회나 시위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능은 시민사회를 국가-정부의 적대적 지위에 놓고 그를 이간하고 분열시킴으로써 대국민 심리전의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있다. 어버이연합은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해 정반대의 선전·선동활동에 들어가면서 대중집회나 시민적 요구의 신뢰성 및 소통능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세월호관련집회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참사에 대한 정부의 무능함을 교정하고 전 국민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신뢰가능한 체제를 마련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요청이

36) 사실 인터넷상의 의사소통을 통제하고 사이버상의 공공영역을 분쇄하거나 왜곡하기 위한 장치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이버모욕죄·명예훼손죄를 보다 강화하는 방편 중의 하나로 현재의 친고죄 방식의 규율을 제3자의 신고에 의해 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개정한다든지, 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검열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든지 하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금까지 가장 해방적인 대중공간인 인터넷 전반에 걸친 감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하는 것이다.

37) 실제 이 글에서는 어버이연합만을 거론하고 있으나 이는 엄마부대 등과 같은 유사한 기능의 조직활동들과 그 제1차적 배후로서의 보수언론연합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사실 현재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은 한 극우단체의 활동이 아니라 그것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일련의 통치술 내지는 그 전채로서의 통치성 때문이다.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버이연합은 마치 그러한 요구가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처럼 공격하고 비난하는 한편, 그들의 집회 자체를 방해함으로써 그 요청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하시키고자 한다. 요컨대, 시민사회에 신뢰의 틈새를 마련하고 이 틈새를 통해 시민사회를 분리하고 상호 이간하는 계기를 확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버이연합의 제1차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정권에 장악되어 있는 언론은 이런 어버이연합에 대한 증폭기의 기능을 한다. 방송 혹은 언론의 공정성(fairness)이라는 미명 아래 수만명이 참여한 대중집회와 불과 수백명이 실체도 없는 비방성 구호만을 외치는 어버이연합의 집회를 동일선상에 놓고 기계적 중립성을 지키며 동일한 비중으로 보도하는 그간의 행태는 이를 잘 보여준다. 어버이연합이 거의 폭력적인-언어폭력과 함께 물리적 폭력도 동원된다- 방법으로 대중집회에 내어놓은 조그마한 틈새를 보수언론 혹은 권언유착의 언론집단들이 엄청난 간극으로 벌여놓고 그 갈라진 틈을 이용하여 대중집회의 본래의 목적을 희석시키거나 혹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오도하는 보도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버이연합의 역할은 분리와 이간, 그리고 적대관계의 형성이라는 당파성에 한정된 것에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그 해악은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적 요구와 정치참여에 대하여 그릇된 인상을 가지게 함으로써 시민사회 자체를 탈정치화하고 그 결과로서 공공영역 자체의 파괴를 결과할 수도 있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한다.

대중집회에 대한, 혹은 대중적·시민적 요구에 대한 어버이연합의 제1차적 임무는 간단하다. 그것은 무조건 부정하고 비난하며 각종의 욕설과 폭력으로써 심각한 사단이라도 발생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는데 놓여 있다. 즉, 대중집회등에 대한 대항적인 요구나 발언을 목표로 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뭔가 극복할 수 없거나 극복하기 힘든 사회적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인상을 불러 일으킨다. 그리고 이러한 인상은 의례히 보수언론연합에 의해서 증폭되어 기성의 사실인 듯한 착시효과 또한 야기하게 된다.

문제는 이렇게 인위적, 의도적으로 조성된 분쟁의 외관은 그것을 바라보는 일반시민으로 하여금 사태에 대한 인식과 정확한 정보의 수집에 상당한 비용을 소요하게끔 만든다. 대중들의 요구를 직접 읽어내는 인식의 과정이 어버이연합의 교란작전에 의해 방해받음으로써 별도의 변별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것은 다시 보수언론연합의 증폭작용에 의해 교란되면서 무엇이 대중의 요구이며 무엇이 왜곡된 정보인지를 가려내고 여과하는 인식과정 자체가 심각하게 교란되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집회나 시위 또는 대중적 관심대상이 되는 이슈에 대한 공적 아젠다화 과정을 두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시민사회는 탈정치화된다. 시민의 문제이며 따라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버이연합의 분쟁야기성 집회는 그 문제로부터 일반인의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그래서 그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이 능력껏 헤쳐나가거나 아니면 그 피해를 감내하고 살아야 하는 어떤 것으로 치환하게 만드는 것이다.³⁸⁾ 그리고 이렇게 공공영역이 파괴되거나 외면당하

38)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전술한 연쇄강화효과는 이런 회피기제를 합리화하는 또 다른 강화기제가 되기도 한다. 세월호참사에 분노하면서도 다른 일상의 삶으로 인하여 그 분노를 표출할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만들어진 사람들은 더러 그 억압된 심리를 어버이연합의 억지주장을 끌어들이어 은폐하는 방식으로 해소하고자 한다. 희생자

게 되는 현실의 결과는 국가 혹은 시장과 개인의 직접적 대면이라는 국가주의적 통치성 내지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모든 이슈들을 사사화하는 한편, 그 삶의 책임조차도 개인에게 떠 넘겨버리는 극단적 자유지상주의의 틀이 형성되게끔 하는 것이다.

실제 이들은 48년체제 즉, 반공국가의 연장선상에 자리잡는다. 그들의 주된 구성원이 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욕구가 강한 탈북자들이거나 반공체제를 경험했던 세대들이며 그들이 주로 내세우는 비방성 구호가 “종북좌파”임은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물론 경우회나 전경련과 같이 정규적인 정치조직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 조직외에 그 어버이연합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검찰의 능장·지연수사로 인하여 밝혀진 바는 없다.³⁹⁾ 하지만 우리의 민주화과정을 주도하였던 가장 핵심적인 정치공간인 광장정치, 길거리정치-보다 정확히는 “운동에 의한 민주주의”-를 현정권의 통제권 안에 두기 위한 방편으로 이 어버이연합을 동원한 것이라고 짐작해 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어버이연합의 사태는 우리 국가이데올로기를 독점해 왔던 반공국가의 사사(私事)화에 다름 아니게 된다.⁴⁰⁾ 제1공화국 출범을 전후하여 가공할 폭력을 행사했던 서북청년단이 반공체제의 구축을 위한 전위대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면, 어버이연합은 이렇게 구축된 반공국가의 재생산을 위한 담론정치 속에 뛰어 들어 그 교두보를 마련하는 사적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⁴¹⁾

4.2. 폭력과 공포의 정치: 길거리정치에 대한 억압

우리의 대중정치에서 집회와 시위는 필연이다. 87년체제의 한계는 97년체제의 신자유주의적 억압과 함께 대중들로 하여금 길거리의 정치에 주력하지 않으면 아니 되도록 내 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1987년의 민주화는 민주주의의 공고화수준으로까지 확장되지 못하였다.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

들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유언비어들을 일반인들이 손쉽게 수용할 수 있었던 것도 이 회피기제의 또 다른 발현태라고 볼 수도 있다.

39) 여기에 이 어버이연합에 대한 지원이 청와대민정수석실과도 연관이 있을지 모른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미디어 투데이, 백혜련 “우병우 청와대 수석-어버이연합 커넥션” 2016년 05월 10일. 또한 법원은 어버이연합에게 청와대 행정관이 집회와 관련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시사저널에 대한 배포중지가처분청구사건에서 그러한 의혹을 품을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기도 하였다. CBS 노컷뉴스, 법원 “청와대, 어버이연합 사주 의혹 합리적이다” 2016-05-11

40) 사실 요즘 극단적 발언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일베와 메갈리아4와 같은 집단적 혐오발언의 사태는 이 어버이연합현상의 또다른 발현태이기도 하다. 그것은 하방강화효과(cascade effect)를 야기하는 인터넷의 속성에서 비롯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념의 극단화를 강제하는 이 반공체제의 압박에 의해 강화되는 현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모든 정치적인 것(여성주의적 의미도 포함한다)을 희화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현실 권력으로부터 스스로의 권력성을 패러디하거나 혹은 그것을 차용하여 현실적인 권력으로 출현하는, 가장 비정치적이면서도 가장 정치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능력상 아쉽게도 이 부분의 논의는 차후로 미루기로 한다.

41) 다만 이 점에서 이 어버이연합에 파시즘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어버이연합은 단순히 물리적 위력의 행사를 위해 약간의 이념적 공동성을 갖춘 일부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잉여집단적 성격을 가진다. 즉, 대중동원체제로서의 파시즘과는 그 행태의 측면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였던 6.10민주항쟁은 실질적으로는 권위주의적 군사정부체제에 대한 저항권의 행사였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민주적 정치질서의 확립을 향한 일종의 시민혁명적 성격의 외침이었다. 그것은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국민적 여망을 최대한으로 수용한 합의개헌의 형태로 이루어진”⁴²⁾ 헌법으로, 대통령의 직선제와 국회의 권한 보완 등 과거 권위주의적인 헌법침해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제반의 장치를 마련하였다. 특히 이 시기 초·중반에 형성된 절차적 민주주의⁴³⁾의 모습이나 헌법재판소가 주도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은 적어도 외형적인 수준에서의 입헌주의체제가 제자리 잡아 가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

하지만, 민중들이 쟁취한 민주화의 성과들을 일부의 정치엘리트들이 신군부와의 타협이라는 형식으로 변형해 버림으로써 87년체제의 실체는 왜곡된 상태로 전개되었다. 대중적 기반이 약한 엘리트 정치인으로 구성되는 소수정당(야당)과 과거 권위주의체제를 주도하였던 “구권위주의 세력”이 정치를 주도하면서 신군부정권의 권위주의적 행태나 정경유착의 양상들을 제대로 청산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과 공존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 결과 87년체제는 “이후의 20년은 민주주의의 모양새만 얻고 알맹이를 놓친 좌절의 역사”로 전락하였고,⁴⁴⁾ 민주화 투쟁의 주력이었던 대중들은 정치로부터 소외당하는 “사회적 균열구조”가 드러나게 되었다.⁴⁵⁾

길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대중정치는 이렇게 정치-특히 대의제에 기반한 제도정치-로부터 소외당한 대중들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사실 그동안 대중집회의 사례들은 현 정부 혹은 이전 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기에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양당체제가 고착되고 대통령선거는 불과 몇 %의 득표율차이로 결정되는 상황에서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구획은 첨예하게 이루어져 있는 우리의 정치상황은 어느 쪽이 정권을 잡더라도 완전한 지배력은 확보하지 못하게 만든다. 여기에 불현듯 진행되는 일련의 촛불집회 혹은 민중총궐기방식의 대중집회들은 집권세력이 내어놓는 통치성 그 자체에 대한 대중들의 불신 내지는 거부감을 야기하기에 충분한 규모로 진행되어 왔다. 이미 장악하고 있는 언론이나 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언론권력으로도 통제하지 못하는, 일종의 해방적인 “운동”공간을 구성해 왔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질서정치는 그 강력한 위력을 발한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은 집시법의 무차별적 적용이라는 법수단을 넘어 다양한 법강제장치들을 동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찰서장에 무한정한 재량여지를 인정하고 있는 집시법의 독소조항들을 활용하여 대규모집회들을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대중집회의 주최자에 대한 구속·수배, 참여자에 대한 위헌적·반인권적 채증과 수사, 소화기·방패·물대포 등을 사용한 폭력적인 진압 등의 폭력을 자행해 왔다.⁴⁶⁾ 그리고 이런 시도들이 주효하지 못

42) 권영성, 헌법학원론(법문사, 2010), 101쪽.

43) 이 때의 절차적 민주주의란 공정하고 주기적인 선거, 경쟁적 선거를 통한 정부의 구성과 교체, 평등한 투표에 바탕을 둔 정치 참여의 확대, 표현과 결사의 자유, 다수결의 원칙 등 일련의 절차들이 제도화되고 실천된다고 하는 최소강령적 관점에서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최장집 외, 어떤 민주주의인가 - 한국민주주의를 보는 하나의 시각, 후마니타스, 2007, 84-5쪽.

44) 백낙청, “6월 항쟁 20주년에 본 87년체제,” 김종업 편, 87년체제론: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인식과 새 전망 (창비, 2009), 57쪽.

45) 김종업, “분단체제와 87년체제,” 김종업 편, 87년체제론, 35쪽.

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나 교통방해죄 등과 같은, 추상적 위헌법의 법리에 경도되어 있는 형사법 조항을 확대적용하여 사법적 처벌로 나아간다. 혹은 집회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식은 입막음 소송의 대표적인 사례로 활용된다.

실제 경찰은 위헌적인 집시법의 틀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거나 지키지 않거나 의사가 없다. 이런 행태들은 기존의 집시법이 안고 있던 문제점을 더욱 가중시키면서 국가 혹은 정권의 안보를 위한 폭력수단으로서 집시법 혹은 경찰력이 변질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집회·시위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써 국가가 그 실현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혹은 만보를 양보하여 그것을 단순한 사회적 필요악 정도로도 인식하지 않는다. 이미 이 자리에는 법치도 법질서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의 규정은 물론 집시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같은 법률의 규정도 아랑곳 없이 그저 그들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홍위대의 폭력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닌 반법치의 횡패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실제 경찰이 시민들의 집회를 따라다니며 자행했던 불법과 폭력은 이 차벽의 연속선상에 존재한다. 수많은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집회현장을 겹겹이 둘러싸 시민들을 완전히 고립시킴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권리를 박탈하는 한편 이들에게 폐쇄공포의 심리폭력을 가하는, 전대미문의 불법행위는 그 대표사례이다. 또 적법한 절차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불심검문에 나선다든지 시도 때도 없이 채증이라는 명분으로 들이대는 카메라로 모든 사람들을 범죄인 취급하며 그 인권을 유린해 왔다.⁴⁷⁾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해야 할 집회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는 아랑곳 없이, 시민의 안전이나 평화의 이념은 간 곳도 없이, 법치의 선봉에 서야 할 경찰이 스스로 법을 유린해 가며 우리의 사회를 야만의 상태로 몰고가고 있는 것이다.⁴⁸⁾

4.3. 사드배치와 외부세력론

사드배치와 관련한 논란은 조금 다른 양태의 통치술이 행해진다. 이전 같으면 예의 안보논리만으로도

46) 심지어 경찰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행사인 집회에 대하여 소요죄의 적용까지도 검토하는 지경에 이른다. 물론 이는 배제되기는 했으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8년이라는 가장 중한 형벌을 선고한 것을 본다면 대중집회에 대한 현체제의 반감은 소요죄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47) 베니스위원회의 권고는 이러한 불심검문이나 출입통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집회·시위의 참여를 통제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찰의 검문이나 수색행위, 그리고 집회·시위장소로의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의 행위는 심각한 무질서상태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미리 집회·시위의 주최자에게 통고되어야 하며 변론과정을 거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때 입증책임은 경찰이 져야 함은 당연하다. CDL-AD (2012)006 OSCE/ODIHR - Venice Commission Joint Opinion on Law on Mass Events in the Republic of Belarus, §109; 채증의 법적 성격 및 그 허용가능성에 대한 글로는 구형근, “경찰법상 집회·시위현장에서의 경찰채증에 대한 연구,” 법학논총(조선대) 제18권 제3호, 2011, 219~247 참조.

48) 어버이연합과 같은 조직을 동원하는 행태는 이 부분에서 나름의 주변적 효과를 거둘수 있게 한다. 대중집회를 직접 공격하게 함으로써 그 집회 자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효과와 함께 권언유착의 통로를 따라 대중적 요구에 반대하는 또 다른 사회부분이 있다는 착시현상을 야기하게끔 함으로써 대중집회의 실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교란시키는 효과를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얼마든지 사회적 반론들을 잠재울 수 있었겠으나, 사드의 경우는 조금 다른 과정을 거친다. 우선 그것은 수차에 걸쳐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에 우리나라가 편입되지 않겠다고 하는 정부의 확약을 뒤집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신뢰에 관한 문제였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현 정부가 중국정부와 밀일관계를 유지하면서 미중관계에 관한 한 중국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는 중립화정책을 고수해 왔다는 점도 이 안보논리가 관철될 수 없는 환경을 이룬다. 게다가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SOFA의 집행단계를 넘어서는 것인 만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며 실제 그런 사례도 수차 있었다는 점도 정부의 부담으로 남는다. 사드배치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상태를 바꾸어버린다는 점에서 헌법이 말하는 “안전보장”의 문제와 직결되며, 우리의 토지와 우리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헌법상의 “중대한 재정부담”이 된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사드배치에 관한 한미간의 협정은 국회비준동의권의 전형적인 대상이 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사용하는 논리는 외부세력론이다. 사드가 배치되는 지역이 칠곡으로 알려져 있다가 최종적으로 성주군으로 결정되자 칠곡군민들에 이어 성주군민들은 집단적으로 항의하기 시작하였다. 외부세력론은 이 과정에서 나온다. 이 반대와 반발은 순수하게 칠곡군민들의 판단과 결단으로 이루어진, 문자 그대로 비정치적인 것이며, 여기에 어떠한 외부세력-아마도 소위 전문시위꾼가 ‘종북’인사들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관여하여서는 아니되며 또 그 관여를 성주군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발적’인, 그러나 상황구속적인 주장이 부가된 것이다.

사실 이 외부세력론은 두 가지의 효과를 향한다. 첫째, 그것은 사드 배치의 문제를 국지화 내지는 사사(私事)화하는 효과를 지닌다. 여기서 외부/내부의 구분선은 군이라는 지역적·행정적 공간의 경계선이다. 그리고 이 경계선 안에 사드 배치의 효과를 가두어버린다. 그것이 전국적인, 그래서 전국민적인 안전과 전국적인 경제와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전략상의 갈등을 야기하는 중차대한 문제임을 은폐하는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담론조작의 틀을 통해 사드와 MD가 구분되고 예의 반공이데올로기가 작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자위수단으로서 사드가 재규정되고, 이 맥락 속에서 사드배치는 국방부의 소관이 아니라 대통령직속의 자문기구에 불과한 안전보장회의의 판단으로써 결정되는 상황이 이루어진다.

둘째, 외부세력론은 그 “외부세력”에 대한 부정적, 무가치판단을 전제로 한다. 민주화의 성과로 등장한-혹은 등장할 것이 예정되었던- 시민사회의 정치화라는 것이 이 언어용법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얻지 못한 채 그냥 부정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다. 나아가 그동안 진행되었던 수많은 집회들-촛불집회, 민중총궐기, 나아가 크고 작은 규모의 총파업들까지-은 모두가 “외부세력”의 개입하에 이루어진, 그래서 빨갱이나 좌파나 종북의 조종에 휩쓸려 버린 절대악으로 규정되게 된다.

한마디로 이 외부세력론은 전국적, 국제적 의제를 사소한 지역의 의제로 축소하고 다양한 형태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과정을 시민들로부터 떼어 놓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외부세력론은 이화여자대학교의 미래라이프대학의 신설에 대한 항의집회에서 다시금 반복된다. 시장주의에 휘말려 대학들이 그 본연의 임무를 망각해가고 있는 실정에서 이러한 대학정책이 이화여대만의 문제는 아닐진대, 이 “외부세력”론은 교육부가 주관하고 시장이 조장하는 대학물신주의를 이

화여대만의 문제로 국한해 버리고 다른 대학들과의 연대의 가능성을 봉쇄해 버렸다.⁴⁹⁾⁵⁰⁾

문제는 이 외부세력론이 그들의 창작물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그것은 보수언론의 연합에 의하여 그리고 그 이전부터 정권의 통치술이 행사되는 과정에서 누차에 걸쳐 반복되어 왔던 권력담론이었던 것이다. “빨갱이”라는 발화는 필연적으로 빨갱지 않는 사람임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이며 “종북”이라는 언술은 그 상대방이 스스로의 사상을 드러내고 검증받아야 할 필연성을 예정한 하나의 규율이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나 자신이어서는 아니되며 내가 연대·협력은 물론 가까이하는 것조차도 금지된 절대금역에 해당하는 악이자 나의 영원한 외부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외부세력”이라는 담론은 “빨갱이” 혹은 “종북”이라는 단어가 연성화된, 그래서 지배이데올로기에 스스로를 순치시켰음을 증명하는 내면의 부재증명에 다름 아니게 된다.

4.4. 국정교과서와 건국절: 가시화되는 신성국가

박근혜 대통령의 8·15 광복절 기념사를 계기로 터져나온 건국절 시비는 우리 민주화의 퇴행현상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 된다. 실제 우리 헌법에 의하면 건국절 시비는 그 자체 존재가치도 없는 것이 된다. 제헌헌법은 이미 그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하면서 임시정부가 수립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재건”하였음을 단호하게 천명하였다. 그 뿐아니라, “대한국민”은 헌법 제정 이전부터 존재하면서 그 대표자-“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를 선출하여 제헌헌법을 제정하도록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48년 헌법이 만들어짐으로써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대한민국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그 헌법적·규범적 토대를 48년헌법으로써 만들어낸 것-즉, 재건한 것임을 거듭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87년 현행헌법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더 이상의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되어 버린다.⁵¹⁾

실제 건국절의 논의는 우리 헌법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찌 되었든 그동안의 헌법의 기본 구조는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 혹은 국가는 대한민국이며, 북한지역은 미수복지구로써 대한민국의 주권이 잠정적으로는 미치는 공간이나 북한정부의 존재로 인하여 실효적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공간이라는 판단이 지배해 왔고 또 헌법의 운용 또한 그에 맞추어 진행되어 왔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는 교류 협력의 대상인 동시에 타도해야 할 악이라는 2중적 지위론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으로 굳어졌고, 북한의 정치권력자들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토를 참절한” 반국가단체(국가보안법 제2조)이며, 북한이탈주민들은

49) 심지어 학생회조차도 ‘운동권’이라는 이유로 그 반대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거부되었다고 한다.

50) 물론 이 성주군민들과 이화여대의 외부세력론은 그 운동의 초기단계에서 나왔던 일시적인 것이기는 하였다. 그리고 그 운동은 아직도 종료되지 아니하였고 그 운동의 양상 또한 낱알이 바뀌는 만큼 계속하여 지켜볼 일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초기의 외부세력론이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사례라는 점에서 원용하고자 할 뿐이다.

51) 물론 군사정권이 만든 63년 헌법에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는 말로 이 모든 것을 되돌려 놓는 듯 했으나, 실제 그 당시에 48년을 건국의 해로 규정하고자 하는 논의는 전혀 없었다는 판단을 뒤집을 근거는 없다.

대한민국국민으로써 별도의 출입국심사가 없어도 당연히 국내에 입국할 기본권적 자유를 향유하는 사람으로 대우해 왔다. 그러나 건국절론은 이 모든 헌법구조를 부정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45년 해방 당시 한반도는 무주공산이었고 48년 헌법으로써 비로소 국가가 형성되었다고 본다면, 그 이전이 이미 국가임을 선언하였던 북한은 대한민국과는 다른 또 하나의 국가로서의 실체를 인정받게 되기 때문이다.⁵²⁾ 그럼에도 이 정부가 건국절의 주장에 앞장서는 것은 정부와 국가를 등치시키고 이를 다시 신성국가로 전환하고자 하는 발상에 터잡은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 실제 이 정부는 뉴라이트계의 사람들과 함께 국정교과서 발간작업을 강행하고 있으며 이승만 국부론과 일제근대화론 등을 거론하면서 역사 털어내기 작업에 전력을 기울여왔다. 친일이나 매국과 같은 반민족행위들과 한민족수탈, 위안부 등과 같은 일제의 폭력과 죄악에 대한 청산의 작업을 생략한 채, 이들을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배제함으로써 현재의 지배세력, 특히 현 정권과 결부된 세력의 원죄를 털어내려는 작업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미국-일본이라는 서태평양의 정치지형을 한반도에까지 확장하는 신냉전적 구도의 문제로 이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치 일본의 전후민주주의가 그러했듯, 영구적인 지배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중심전략으로 이어진다. 해방공간에서 정부형성(state building)의 과정이 민족주의의 축에서 급격하게 좌우 이념대립의 축으로 전환되었듯이, 지금의 정치적 지형 또한 계급의 문제나 1 대 99%의 문제에서 반공과 신자유주의의 축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 펼쳐지고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건국절 주장은 우리의 현대사에서 경험하였던 모든 것을 지워버린다. 해방 직후의 한반도에 오직 존재했던 것은 이승만의 ‘지도’하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창조해낸 단호한 “정치적 결단”뿐이라고 본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며 민주공화국에다 국민주권의 나라임은 1948년에 제정된 헌법이 그리 규정하였기에 그리 되었을 따름이라는 공허한 변론으로 이어진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정부가 만든 것이며, 그들이 행사한 권력이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헌법 전문)이 부여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창출한, 그들만의 어떤 것일 따름이다. 여기서 주권자로서의 국민은 오로지 통치의 대상으로서의 신민으로 전략해 버리고 만다.

결국 이 주장이 제거한 것은 우리의 현대사뿐 아니다. 그것은 3·1혁명으로 확인된 국민주권이라는, 숭고한 역사적 명령까지도 없애버린다. 나아가 특정인을 국부로 내세우며 그의 모든 권위와 권력을 현재의 대통령에게 세습하고자 한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그 자체가 되어 국민 위에 군림하며, 그와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이 되어 국가를 통치하는 절대국가 체제를 추구하는 것이다.

52) 이 점은 건국절론의 논리에서 그대로 증명된다. 그들은 임시정부가 외국의 국가승인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외국의 국가승인을 받은 북한은 그 반대논리에 의해 국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94년에는 UN 동시가입을 통해 실질적인 국가승인을 받은 셈이 된다. 또한 UN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받았다는 논리 또한 허술하기는 마찬가지다. 임시정부가 국가가 아닌 이유는 주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제헌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48년 5·10선거는 38선이남지역에 호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만 투표권을 부여하였다. 북한지역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실효적 주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잠정적 주권론’을 부정하는 그들의 같은 논리로 우리는 북한지역에 대해 우리의 국가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이 완전체로서의 신성국가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으로 동원되는 전략무기에 다름 아니다.

국가의 신성화는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해방공간에서 나타났던 민족주의의 문제는 청산의 문제이며 민족국가의 구성에 관한 문제이지만, 반공이나 신자유주의와 같은 사안들은 체제의 문제로 다른 체제와의 대결과 대립의 문제로 이어진다. 그래서 그것은 항시적인 위협과 위험에 대한 공포가 필요하게 되고 적대의 개념과 이념에 따라 인구의 구획이 필요하게 되고 이를 따라 배제와 배척의 폭력이 수반되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다름 아닌 “국가”로부터 도출된다. 철저한 국가주의적 사고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마치 일본의 민주주의가 “천황”⁵³⁾이라는 절대존재를 존손시킴으로써 여전히 국가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의 정권은 “국가”라는 추상화된 존재를 절대화시킴으로써 스스로의 권력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가는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⁵⁴⁾

5. 결론: 민주적 입헌주의의 지체 내지는 퇴행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의 ‘통치’기간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화 지체는 적지 않았다. 이 집권세력들은 끊임 없이 시민사회를 분열시키고 공공영역을 해체하는 한편 정부는 시민사회를 포섭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대관계의 저 편에 두고 통치의 주체가 아니라 통치와 군림의 대상으로 추락시키고자 애를 써 왔다. 지난 대선과정에서의 국정원 등의 선거개입이나 “심리전단”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되어 왔던 댓글공작 등은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면서 그 세뇌작업을 거쳐 지난 날의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을 재생산하고자 하는 시도에까지 가닿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태들은 내란음모사건을 계기로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87년체제가 어렵사리 마련한 절차적 민주주의 내지는 민주주의의 최소강령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어버이연합이 수행한 -물론 그것은 조그마한- 역할들은 이런 민주주의의 퇴행현상을 가리키는 대표단수가 된다. 실제 그동안 국정원이 중심이 되어 수행해 왔던 이런 대국민 심리전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어버이연합이 수행했던 사회적 분열과 갈등조성의 역할들은 해방 이래 지속되어 온 반공지상주의를 등에 업은 기존의 정치세력들이 영구히 지속가능하게끔 만든다. 통합진보당 정도의 소수정파도 허용

53) 가능하면 당해 국가의 공식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에 이 글에서는 일왕이라는 말보다는 헌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천황이라는 말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일본헌법이 아니라 “일본국헌법”이며, 청대의 군주를 “왕”이 아니라 “제”라고 지칭하는 것과 같다.

54) 이 지점에서 터키의 사례는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도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듯 하다. 어슬픈 군사쿠데타를 계기로 집권당의 친위쿠데타가 발생하여 1920년 혁명에 의한 터키공화국이 들어선 이래 지속되어 왔던 세속주의의 원칙이 허물어지고 에르도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술탄체제가 들어설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터키의 민주화운동이 이스탄불을 휩쓸고 간 것이 불과 3년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EU라고 하는 거대한 견제세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터키의 권위주의화가 진행되고 있음은 가뜩이나 취약한 민주주의에 터잡고 있는 우리에게 상당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되지 않는 굳건한 이념적 장벽은 그들만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독점할 수 있게 허용할 뿐이다. 국가와 안보라는 명분하에 현체제에 대한 그 어떠한 도전도 불법화시키고 무력화시킬 수 있게 한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주장들은 물론, 세월호참사로 촉발된 안전사회의 요구조차도 종북좌파의 낙인으로 배척해 버리는 현재의 상황은 이를 대변한다.⁵⁵⁾

엄밀히 말하자면 어버이연합이 수행하는 역할은 97년체제의 한계를 틈타 극우적 집권세력들이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고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희생하는 큰 과정에 비추어볼 때 아주 적은 부분에 한정되어 있을 따름이다. 특히 그것은 국가의 저급한 통치술이 작동하는 하나의 사례이자 양상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48년체제-반공국가체제-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체제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과 사회적 소속감, 그리고 경제적 생계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주로 탈북자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들에서 의해 반복재생산되고 이를 보수언론연합이 확대재생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적지 않은 정치적·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여기에 현 정부는 민주적 입헌주의의 이념을 거부하면서 이런 오도된 현실에 기생한다. 오히려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장기(영구)집권을 꿈꾸며 철저히 반입헌주의, 반민주주의, 반인권·반법치의 과거로 퇴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핑계로 새로운 정경유착을 꿈꾸며, 효율과 생산성을 내세우며 자본, 관료, 전문가의 편협한 조합주의를 도모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과 인권과 민주주의는 하찮은 희생양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된다. 수많은 피와 땀으로써 세계 문명사회가 쌓아 왔던 그 인권항목들을 이제 “좌파” 혹은 불순세력의 투정 정도로만 인식될 뿐이며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가 이루어왔던 민주화의 성과조차도 자본의 욕구 앞에서 여지없이 파괴되고 만다. 언론을 통제하며 시민들의 광장을 봉쇄하며 시민의 입과 귀를 막고 눈을 가린다. 아울러 실명제, 감청제 등으로 국민감시의 전방위체제를 구축하며 언제라도 개개인의 동정을 꿰뚫어 보는 야경국가를 도모한다. 그들이 말하던 “잃어버린 10년”이 이제 우리들에게는 “빼앗겨버린 20년”이 되어 우리들의 전생활을 압박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렵사리 쌓아왔던 우리의 민주적 입헌주의는 여지없이 훼손되고 있다.

실제 내란음모사건으로 최악의 상태로 치달고 있는 현재의 (인권)상태는 30년전의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인권상태와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러기에 C. Schmitt가 말하는 정치적 통일체의 형성을 위한 주권적 결단이 필요하게 되는 상태가 지금 이 순간이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게 된다. 그 정치적 위기가 현 정권의 과거회귀경향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었기 때문이다. 혹은 보기나름으로는 과거의 운동과 구별되는, 더욱 강력한 주권적 결단을 위한 정치적 투쟁(C. Schmitt적 의미에서)의 상태가 형성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과거의 운동이 정치적 민주화,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내용-이념중립적이었으며, ‘예외상태’의 선언은 우리의 주권자-되기를 가능하게 만든다. 과거 민주화와 산업화의 성과조차도 새로운 권위주의에 흘러버려야 했던 남미 제국의 전철을 우리가 새삼 되밟아나가는 우를 범하지 않으

55) 어떻게 보면 이 어버이연합의 사태는 미래의 과거사이다. 그것은 현재의 민주주의 지체를 야기한 것일 뿐 아니라, 시민사회를 교란하고 공공영역을 훼손하는, 일종의 국사범의 성격을 따는 사건이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지금 제대로 교정되지 못하면 이 사건은 앞으로 과거사의 차원에서 청산되어야 하는, 후세대의 과제로 넘어가게 된다.

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을 외치며 국가적 폭력에 단호히 대처하는 시민의 권력을 과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정은교수의 말처럼 우리는 “황혼녘에야 날아가는 [미네르바의] 올빼미가 아니라, 늘 깨어 있어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기에 “국민 대다수가 정치적 운명을 새롭게 결정하고자 하는 의지”로서의 주권적 결단은 이런 상황에서 새삼 그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내란음모사건 3년, 우리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다른백년 연구원장)

—

당시 현재의 판결로 인한 통합진보당 해산조치는 2012년 대선개입으로 위기를 맞은 국정원이 상황 돌파의 일환으로 그 동안 내사를 해 왔던 통합진보당의 활동을 ‘내란음모사건’으로 공포하여, 수세국면에서 방어적 공세를 취한 것이었다고 본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 박정희 정부 때처럼 애초부터 기획하여 없었던 사건을 조작한 것이라기 보다는 분단/전쟁 체제 하에서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집단(친북의 의심을 살만한 행동을 했거나 분단체제를 흔드는 활동을 한 집단이나 개인)의 행동을 평소에 계속 사찰, 감시하다가 집권세력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정치적 위기 돌파를 위한 카드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란음모사건 당시 박근혜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인 비서실장,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이 모두 군 출신이거나 70년대 유신시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공안검사 출신들로 모두가 ‘공안 마인드’를 갖고서 반정부 비판세력을 바라보는데 매우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익숙한 방식을 택한 것이다.

당시 내란음모사건의 주요 타깃은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제1 야당과 사회운동세력이다. 그들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쪽이나 그 사건에서 혐의를 받았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남한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대중적인 지지를 받기 어려운 세력이나 개인을 희생양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배제할 경우, 남은 사람들에게는 자기검열을 통해 정치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즉 통합진보당을 ‘내란의 주범’ 즉 정당, 혹은 정치적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전체 정치지형(political landscape)의 폭을 좁히고,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위협이 될 수 있는 제1 야당을 순치시키고, 사회운동세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

당시 시점에서 과거 같았으면 일종의 공안정국 조성을 할 수도 있었지만, 과거와 달리 어느 정도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특히 과거 군사정권 시기와 달리 청와대, 국정원, 검찰까지는 함께 움직여도 법원까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설사 그렇게

의도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을 것이다. 통합진보당이 실질적으로 친북적인 활동을 한 증거가 없고, 그것이 일반 사람들이 공안정국을 받아들일 정도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종북' 세력이 제도 정치권에 진입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각시킴으로써 보수세력을 결집시키고, 중간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위축시키는 정치적 효과는 충분히 거뒀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내란음모사건' 현재 판결로 제1 야당, 그리고 같은 진보정당에서 갈라져 나온 정의당이 안보, 북한문제에 대해 훨씬 보수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 이 사건의 최대의 성과라 할 수 있다. 그 이후 현재까지 더 민주당이 북한 및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현 정부와 여당과 각을 세우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로 그 결과라 할 수 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헌법 아래 진보'를 내세운 것도 현 정부나 집권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내란음모사건'이 거둔 성과라 할 수 있다. 물론 과거 나치 집권 과정에서 사회민주당이나 '매카시즘' 당시, 최근에는 9.11 테러 이후 이라크 공격에 대한 미국의 민주당 역시 이런 태도를 취했다. 즉 공산당을 불법화하면, 그들이 사라진 정치적 공간만큼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이익계산도 작용했을 것이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사실상의 전쟁상태에 돌입했을 때, 내부의 적으로 지목된 집단에 대해 동조 지지를 할 경우 함께 적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위험부담이 작용하였다. 결국은 객관적인 전쟁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슈미트가 말했듯이 전쟁, 즉 예외상태를 선포하는 권력집단이 '전쟁'이라고 상황을 규정할 경우, 그리고 모든 언론이 그것에 동조하여 정치사회가 양극화될 경우 그것을 논리적인 방식으로 반박하기는 어렵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시 민주당은 내란음모사건이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자신들을 표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해 무기력하게 대응하였다. 특히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대부분 출석 동의하였다. 당시 이석기 의원은 현행범으로 입증된 것도 아니고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으며, 단지 어떤 입장이냐 발언을 한 증거만 갖고서 체포를 하려 했는데, 그것을 동의했다는 것은 결국 의원 자신들은 물론 의회의 권위를 부정한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나는 종북이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이 바로 독일에서 히틀러의 학살까지 가져온 사회민주당과 노동조합 운동의 기회주의적인 처신이었다.

지금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더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내세우지 못한 것도 바로 '내란음모사건'의 후과라 할 수 있다.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반미'도 '친중'도 아닌 국익의 문제, 피해 당사자인 국민들의 문제이며, 국회의 동의, 국민적 토론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그런데 '반미'로 낙인찍힐까 두려워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것은 안보문제에 관한한 정부, 여당과 같은 보조를 취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 좁혀진 정치지형에서 야당은 안보, 국방 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 복지 문제에서도 사실상 '사회주의'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을 피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 기득권 세력의 편에 서게 된다. 필자가 강조한 '전쟁정치'의 구도가 강화되면 한국의 야당은 실제로 설 자리가 없고, 기성의 지배구조를 재생산하는 보조자의 역할에 머물 가능성이 큰 것도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다. 안보, 국방 사안은 단순히 안보사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경제체제, 권력구조의 재생산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 반대운동을 ‘불순’ 등의 전근대 시절, 식민지 군사독재 시절의 담론을 활용하여 공격하는 것은 바로, 야당의 무기력, 즉 ‘내란음모사건’과 같은 비상적인 결정에 대해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데서 기인한 것이다. 내란음모사건에서 만들어진 권력투쟁의 지형, 정치정책적 논쟁의 지형이 오른 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반드시 안보관련 사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치적 반대세력의 공격이나 시위에 대해서는 별 부담없이 진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구속과 5년형 구형, 백남기 농민 사건등은 모두 그러한 정치지형이 만들어낸 결과라 볼 수 있다.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한국의 1 단계 진보정치 운동이 제대로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매듭을 지은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이석기 녹취록의 발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보면, 상반기 전쟁위기 당시 약간의 국지전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과거 한국전쟁 때와 같이 예비검속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그런 경우에 대한 대응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로 보인다. 전쟁 혹은 국지적 충돌이라도 일어나면 현재의 남한 정부가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반대세력을 검속해서 구금, 수용하거나 할 수 있다는 우려가 그들 사이에서 있었던 것 같다. 90년대 초 윤석양 이병의 기무사 사찰 리스트까지 나왔듯, 평소 사찰대상에 어느 정도 들어갔던 사람들은 1차적인 공격의 타깃이 될 수 있다.

한국전쟁 당시 보도연맹사건처럼 남한 정부가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지 말아야 한다’며 일종의 사전적인 액션을 생각했을 수 있겠다. 특히 북한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북과 동조해서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전향한 보도연맹원에 대해, 북과 동조할 의사가 없는 사람까지 체포해서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이 서클 내에선 했을 수도 있겠다. 그게 전쟁의 두려움이다. 그러나 그러한 정세인식은 둘째 치고, 그 과정에서 과거 ‘비합법 조직’에서나 나올 이야기들이 제도 정치권의 의원이 참석한 모임에서 나온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탄압의 빌미를 준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비합법 반체제 정치 운동이 계속 존재했고 그 운동의 존재 근거가 나름대로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87년 민주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분단과 남북한 긴장이 엄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운동세력이 다 제도 정치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제도권에 들어가 역할을 해야 하는 제도권 진보정당도 필요하고 바깥의 사회운동, 통일운동이나 평화운동도 필요했다. 통합진보당 일부 세력이 민족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북한을 반외세 혹은 통일의 주도적인 세력으로 보았다면, 그들은 한국에서 제도정치권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다.

이석기 의원 측은 북한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했어야 했다. 이정희 대표도 그런 활동을 많이 했지만 방산비리, 미국 무기 도입 문제나 미군주둔으로 인한 한국 주민들의 피해, SOFA 개정 문제, 동아시아 외교관계, 대북지원 문제 등 얼마든지 민족문제에 개입할 입지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진보적 대안을 만들어나갔어야 했다. 앞으로도 구 통합진보당 세력이 제도정치권에 다시 들어가면 과거 조봉암 선생이 했듯 동북아 평화, 남북통일의 대안들, 군비감축 등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회정치를 해야 한다. 이념·사상적 문제에서도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대안을 만들어가야 하는 데 그 점에서 통합진보당이 일종의 공안몰이의 희생자가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장차 진보정치세력이 등장하는데 큰 짐을 안겨주었다.

정치사법과 국가폭력의 극복을 위하여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내란음모와 선동의 요건을 교묘하게 구별하는 사법의 궤변

내란음모사건 대법원 판결은 음모죄에 적용되는 실질적 위험성 요건은 내란선동죄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내란선동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선동에 고무되어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말한다. 이에 따르면, 내란음모죄와 선동죄의 성립요건은 서로 다른 것이 되고, 선동죄는 음모죄보다 훨씬 완화된 요건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된다. 실제 항소심 판결은 그런 논리에 따라 5.12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 사이에 내란실행의 구체적인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이석기와 김홍열의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이석기의 발언 등으로 당시 참석자들에게 ‘내란의 실행행위를 결의하고 실행하도록 할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내란선동죄의 유죄를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이런 항소심 논리를 승인하였다.¹⁾ 대법원은 ‘음모죄’에 관하여 ‘실질적 위험성’을 요건으로 판시하였던 기존의 판례를 무시할 수 없었던 반면에, ‘음모’와 ‘선동’의 교묘한 개념구별 논리를 통해 법정형이 같은 내란선동죄의 처벌을 승인 한 것이다.

그러나 음모와 선동의 개념은 이처럼 다르지만, 양자는 범죄의 실행의 착수 전단계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동질적이다. 범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행해지는 예비·음모와 선동은 모두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예비·음모건 선동건 간에, 그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음모 내지 선동행위가 실제 범죄의 실행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성이 존재하는 경우여야 한다. 즉, 음모죄건 선동죄건 간에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행위가 장래의 실질적인 내란범행으로 나아갈 구체적인 위험성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선동죄라고 해서 음모죄보다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은 단지 음모와 선동이라는 행위유형에서만 서로 다를 뿐이며, 성립요건을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할 형법이론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란음모죄건 선동죄건 간에 실질적 위험성이라는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정치적으로 소수진영이나 진보적 정치진영의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Yates 판결은 미국공산당(Communist Party USA)의 당직자 14명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정부전복을 꾀하는 교육과 정부전복의 선동 및 모의를 했다는 혐의로 스미스법(Smith Act)²⁾

1) 대법원 2015.1.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들은 단순히 사회주의 혁명사상을 옹호하는 것으로는 처벌할 수 없으며, 스미스법 위반이 인정되려면 정부를 전복하려는 적극적인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면서, 폭력적 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선동과 단순히 사상적 신념을 교류하거나 옹호하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국가보호의 이익 간에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스미스법은 “추상적 독트린으로서 정부의 폭력적 전복을 옹호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³⁾ 판시내용의 일부를 인용하면, “폭력적 전복의 ‘성취를 위한 행동’, ‘행동규칙이나 원칙’으로서의 폭력을 겨냥한 것으로 인정되는 주장에 의하여 그리고 ‘선동적 언어’를 채용함으로써, 어떤 집단에게 장래의 폭력적 행동의 준비를 고취시키거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것은, 그 집단이 충분한 규모와 응집력을 갖추고 있고 충분히 행동을 지향하고 있으며, 다른 상황들이 그러한 행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합리적으로 정당화해 주는 경우에는 헌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그러한 종류의 옹호는 비록 그것이 궁극적으로 폭력혁명을 이끌어내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표출되었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행동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Dennis 선례에서 말하는 행동을 준비하는 고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⁴⁾ 이 판결의 의미는 기존 정치체제에 대한 폭력적 전복이나 혁명을 주장하는 표현을 그 자체로 처벌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표현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려면 그것이 실제의 “해악적 행동”으로 연결될 급박하고도 명백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내란음모사건은 사법부가 법이론의 궤변을 통원하여 민주주의적 개방성의 요청을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2. 정치사법과 국가폭력

1) 흔히 법이론에서는 ‘(옳은) 법’과 ‘폭력’을 대비하여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⁵⁾ 여기에서 ‘법’은 개념적으로 정의의 이념을 대변한다는 점에서만 ‘폭력’과 대척점에 설 수 있다. 오히려 현실에서의 법과 법실천은 정의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 현실의 법과 정의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데리다의 말을 인용하면, “법은 정의가 아니다. 법은 계산의 요소이며,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정당하지만, 정의는 계산불가능한 것이며, 정의는 우리가 계산불가능한 것과 함께 계산할 것을 요구한다.”⁶⁾

사실 법의 폭력성은 본래 법치주의 속에 내장되어 있다. 법치주의는 ‘법·인권·민주주의’의 삼각원리에 기반하여 작동하는데, 법(치)의 폭력성은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적 공론장의 정치 영역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적 정치영역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잠식하고 있는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2) 정확한 법명은 Alien Registration Act Of 1940(18 U.S.C. §2385)이다. 1940년 미국 연방법으로 도입된 것으로, 미연방정부의 전복이나 파괴를 교육, 옹호하거나 그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는 행위 및 그 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그 외에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 성인에게 정부에 등록하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두고 있었다.

3) *Yates v. United States*, 354 U.S. 298 (1957).

4) *Yates v. United States*, 354 U.S. 298, 321-322 (1957).

5) 5·18과 관련하여 이러한 분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는, 박은정, “법·힘·저항 - 5·18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5·18기념재단 엮음, 『5·18 민중항쟁과 법학』 (학술논문집 2), 2006, 91-118면.

6) 자크 데리다(진태원 옮김), 『법의 힘』, 문학과 지성사, 2004, 37면.

정치와 사법의 관계에서 볼 때, 민주주의적 개방성에 대한 요청은 사법의 판단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그 최소한의 조건을 교정해 주는 역할에 한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정치이념의 다원성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은 민주주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필수요소들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공간은 매우 불균형적이며, 내란음모사건 및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서 보듯이,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사법부는 이러한 불균형적 조건이 정치적으로 유지·강화되도록 적극적인 보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의 요체로 정확하게 포착해야 한다.

2) 우리는 국가가 동원하는 폭력이 국가의 공식적인 정책이나 방침, 이데올로기로 혹은 제도화된 법에 기반하여 행해질 때 이를 ‘국가폭력’이라 부른다.⁷⁾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도 “떼법 청산”을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 ‘법치’는 사회적 불안정과 시민의 저항이 자본주의질서의 붕괴로 나타나지 않도록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는 도구로 변질되어 버렸다.

(형)법은 언제나 지배질서에 대한 저항과 도전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특히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거대 자본의 횡포에 대항한 사회적 저항은 거세지는 반면에, 이러한 갈등과 저항을 정치적·민주주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정치의 장은 급격하게 축소되었다. 결국 지배질서에 위협이 될 만한 사회적 저항을 억압하고 관리하는데 (형)법의 역할은 급격하게 팽창하게 된다.

과거 한국전쟁기와 군사독재시절에 발생하였던 적나라한 민간인학살사건이나 간첩조작사건들은 철저한 반공주의 정책과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국가폭력의 전형적인 사건들이었다.⁸⁾ ‘법의 외관’조차 있는 그야말로 적나라한 폭력 그 자체였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국가폭력에서는 법의 폭력적 본질을 주목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정치세력과 자본 그리고 법조집단의 동맹으로 형성된 거대한 권력이 신자유주의 질서의 영속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폭력을 일상화하는 수단으로 법치를 동원하는 체제인 것이다. 여기에 분단의 특수한 정치적·역사적 경험에 기반하여 ‘종북담론’이 시민성을 분할하게 제거하는 법적 폭력성의 한 계기를 형성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현실에서 작동하는 법이 정의의 이념과 단절된 무엇, 내지는 강제의 폭력적 지배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법은 늘 정의의 이념을 지향하고, 또 정의의 이념은 현실의 법과 법실천을 통해서 비로소 구체화된 모습으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 그런데 이러한 법의 이면에는 언제나 폭력성의 계기가 함께 존재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끊임없이 제거되고 파괴됨으로써만 정의의 요청에 다가갈 수 있다. 5·18 민중항쟁에서 잔혹한 국가폭력에 맞선 처절한 투쟁과 자기희생은 ‘법 외적인’ 적나라한 국가폭력에 대항한 선각자적인 것이었지만, 오늘날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의 기획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3. 저항운동의 기획 : 차이의 담론과 보편성의 담론

7) 김동춘, “분단이 낳은 한국의 국가폭력 - 일상화된 내전 상태에서의 ‘타자’에 대한 폭력행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23호, 2013, 115면.

8) 이에 대해서는, 한성훈, “국가권력과 정초적 폭력 : 증오의 정치와 추방된 시민”, 「종북담론의 실체를 밝힌다」 토론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주최) 발표문(2013.8.27.) 참조.

내란음모사건과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결정은 우리 사회의 정치지형을 급격하게 수구보수 일색으로 재편하려는 거대한 ‘수구정치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순옥 교수는 독일의 헌법과 연방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분석하면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근거로 하여 헌법재판소가 소위 ‘전투적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시민들에게 ‘헌법충성’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이러한 법치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에 봉사하는 원리가 아니라, 사법의 권위를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준법을 강요하는 사이비법치주의로 전락한다고 했다.⁹⁾

자본과 국가권력의 폭력성은 점점 더 ‘합법성’의 외관을 획득하면서 확장되는 반면에, 체제의 모순과 부당한 법질서에 대항하는 시민 주체들의 저항운동은 ‘불법적 폭력’으로 강력한 억압과 통제의 대상이 된다. 법치주의는 법폭력의 행사지점으로 ‘타자화된 적’을 상정함으로써, 혹은 사회적 저항을 시민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표상하도록 하면서 신자유주의 하에서 정치권력과 자본의 이익이 보장되게끔 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권력 행사는 사법부의 보증까지 더해져 법적 권위와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다.

그렇다면 법(치)의 이름 하에서 질식된 민주주의와 인권의 정치 공간을 “어떻게” 재창출할 것인가? 이 질문은 ‘법의 폭력’에 대항하여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 정당한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한 국가폭력의 제도화 수준이 강고해질수록 의회제도의 틀 안에서 국가폭력, 특히 구조적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흔히 종북 논란에 대하여,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해산 논란에 대하여 ‘차이와 다양성’을 승인하자고 말한다. 분명 맞는 말이다. 그러나 차이와 다양성 승인의 인권담론은 민주주의 침탈의 현재의 상황을 돌파할 운동적, 이론적 잠재력을 별로 갖고 있지 못하다.

지젝(Slavoj Žižek)은 ‘적대의 정치’를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하면서, 보편성의 원리를 강조한 바 있다 : “실제적 보편성은 서로 다른 문명들이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동일한 기본적 가치들을 공유한다는 따위의 깊은 감정이 아니다. 실제적 보편성은 오히려 동의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공유하는 부정의 경험 속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험 속에서,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묻는 각자의 경험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혁명적 연대의 구호는 ‘우리의 차이점을 서로 용인하자’는 게 아니다.”¹⁰⁾

여기에서 ‘주권’의 실현은 잠재적으로 늘 적대성의 내전을 격화시킬 수 있는 폭력성을 내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는 전략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¹¹⁾ 그렇지만, 그가 말한 “실제적 보편성”은 인권의 정치 영역을 개척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그람시가 말한 역혜게모니 전략이기도 하다. 여기서 말하는 인권의 ‘실제적 보편성’은 지젝의 말처럼, “부당한 권력행사에 동의하지 않음”을 기반으로 해서 주체들의 연대를 활성화하고 기존의 자유주의적으로 ‘파편화된’ 인권담론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담론을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폭력에 대항하여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동력은 근본적으로 ‘국가제도와 법 바깥’에 서만 가능하다.¹²⁾

시민 주체들의 저항운동은 대개 시민불복종운동 혹은 보다 적극적인 직접행동으로 발현된다. 아렌트

9) 국순옥, “법치국가의 신화와 현실”, 민주법학 제19호, 2000, 111면.

10) Slavoj Žižek, 이현우 외 옮김, 폭력이란 무엇인가, 2011, 난장이.

11) 김승환, “국가와 폭력”, 진보평론 53호, 2012, 290면.

12) 김승환, “국가와 폭력”, 진보평론 53호, 2012.9. 287면 이하.

는 “시민 불복종은 뜻있는 시민들이 정상적 통로로는 변화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으며 호소가 거부당하거나 실행되지 않는 경우, 또는 그와 반대로 정부가 그 적법성과 합헌성이 심히 의심스러운 일을 주장하여 추진하거나 변경을 추진하려 한다는 것을 확신했을 때 일어난다”고 말한다.¹³⁾ 시민의 저항행동은 단순히 처벌과 희생을 감수하는 도덕적인 힘에서 벗어나 새로운 민주주의적 정치원리를 구성하는 능동적인 힘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시민의 저항운동은 시민 주체들이 스스로의 삶에 관한 의제를 논의할 민주주의적 공간을 스스로 창출하는 과정이다. 그것은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5·18 항쟁의 경험을 되살리 필요가 있다. 저항운동이 법을 파괴하는 폭력적 성격을 지니는 경우라도 그것은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율성에 기초한 정의롭고 평화적인 공동체를 지향해가는 정당한 것으로 옹호될 수 있어야 한다.¹⁴⁾

시민의 저항운동이 지향해야 할 실제적 보편성은 공공선의 이념에 맞닿아 있다. 노동권과 생존권의 보장,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전에 관한 시민사회의 통제권 확보, 사회적 약자의 존엄할 권리의 보장 등이다. 아감벤의 표현을 빌리자면, “호모 사케르”를 만들지 않는 사회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것이 또한 올바른 법치를 구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13) 한나 아렌트 지음, 김동식 옮김, 공화국의 위기, 1979, 도서출판 두레, 85면.

14) 김동춘, “시민불복종과 법치주의적 상상력 : 합법성의 도그마에 대하여”, 시민과 세계 제3호, 2003, 132면.
그는 파괴적 직접행동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토론

김철준 (법무법인 다산 대표 변호사)

‘내란음모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것들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1. 국정원이 기획하고, 제작하여, 주연까지 맡은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¹⁾

90년대 중반 인권운동을 처음 시작하던 무렵, 조작간첩 사례를 찾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를 만나 인터뷰하는 일을 했다. 재심을 청구하기 위한 준비였는데 10년, 20년 넘는 수감생활이 끝나고 몸도 마음도 지친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때 마음이 참 무거웠다. 당시 간첩으로 조작되기 위해서 몇 가지 공통된 경험이 있었다. 가령 이런 것들이다. 영문도 모른 채 납치당하듯 연행되고,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수사공간에서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문을 겪으면서 간첩행위를 했다고 자백해야 했다. 법원은 검사의 공소 사실을 기계적으로 인정해 공소장과 판결문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런 패턴은 엇비슷하게 모든 조작간첩사건에서 공통으로 나타난다. 또한 간첩조작 사건들은 집권세력이 정치적으로 위기를 경험하고 있을 때 어김없이 등장해 안보논리로 국민들을 몰아갔다.

2013년 8월 28일, 국정원은 이른바 ‘내란음모’라는 칼을 휘두르며 통합진보당 소속 이석기 의원을 포함해 5명을 연행했다. 당시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국정원에 의한 ‘내란음모’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70~80년대 조작간첩 사건이 많이 떠올랐다.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변형된 부분들도 있었다.

신체에 가하는 물리적인 고문은 사라졌을망정 공안기구 수사관들이 행하는 고도의 수사기법, 일상적이고 체계적인 감시는 신체적인 고문 못지않게 심신을 고통스럽게 했다. 고작 몇 줄 글을 읽어준 후 이 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집요하게 물어보는 수사관들의 태도를 들으면서 공안기구들은 이들을 ‘확신범’으로 다루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조작간첩 피해자들은 공안기구에 끌려가면 대략 60일에서 90일 동안 세상과 단절된 조건에서 수사관들을 대면해야 했다. 마찬가지로 국정원이 이

1) 「아무도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소위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인권침해 보고서」에 <보론>으로 실린 필자의 글을 일부 재정리함.

사건을 터뜨린 후, 구속된 사람들과 그 가족들, 압수수색을 경험한 사람들, 5월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세상과 단절된 조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조작간첩 피해자들을 ‘간첩, 빨갱이’로 만들어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려 했던 모습은 통합진보당 당원들을 ‘도깨비나 돈키호테’ 대하 듯하며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켰던 모습과 겹쳐지기도 했다. “아무도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는 구속자 가족의 말이 계속 귀가에 맴돌았다. 또한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연일 열리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다.

국정원, 정보를 쥐고 여론재판을 이끌다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은 공개적으로 언론에서 발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만약 다른 국가기관들 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보도자료는 물론이고 적극적인 언론브리핑 자리도 마련했을 것이다. 하지만 국정원은 보도자료도 발표하지 않았고 그 흔한 언론브리핑 자리도 마련하지 않았다.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언론과 접촉을 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내란음모와 관련된 보도들은 확인된 바 없이 쏟아졌다. 사건은 언론을 통해서 ‘국정원발, 보안당국발, 검찰발’ 이런 식으로 보도되었다.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들은 출처가 모호한 그렇지만 국정원이 흘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이다. 압수수색을 경험했던 증언자들에 따르면, 국정원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을 때 이미 수많은 언론을 대동하고 있었다. 새벽 6시30분이라는 이른 시간에 10곳 압수수색 현장에 도착한 언론사들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것일까? 국정원의 협조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그림이다. 이어진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라진 채 진보당원들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자로 낙인찍혔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조건은 국정원이 가진 권력의 힘이다. 물론 그 권력은 국정원이 진보당원에 대한 감시와 사찰, 협조자를 통해 확보한 정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정원, 압수수색과 수사과정에서 형사소송절차를 무력화시켰다

국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과 수사를 경험했던 증언자들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보장하는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공통으로 증언하고 있었다. 국정원 수사관들은 압수수색을 허위로 고지하거나, 영장을 형식적으로 제시하였으며, 혐의 사실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국정원이라고만 밝힌 채 이름을 이야기 하지도 않은 사례도 있었고 설사 밝혔다고 해도 허위일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국정원 수사관들은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압수, 공소사실과 무관한 물품들에 대한 압수를 진행하였다.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압수수색에 비해 압수된 물품 중 직접적으로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거의 없었으며, 실제로 재판에서 압수물 다수가 증거물로 채택되지 못했다.

국정원 이라는 비밀정보기관의 수사는 일반적으로 경찰의 수사와는 다르다. 장소가 국정원이라고는 하지만 공개되지 않고, 국정원 수사관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수사한 사례도 보고되었다. 국가정보기관

을 대표하는 국정원 수사관 대(vs) 개인이라는 위치는 수사과정에서 무기대등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나가기 힘들다. 당시 국정원 수사관은 소환조사 당사자들을 이미 'RO 조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정원 수사는 국정원이 'RO 조직원'으로 지목한 인물들과 내란음모죄의 연관성을 찾아내는 데 초점이 맞추었다. 국정원이 'RO 조직원'이라고 선별한 기준은 '5월 정세강연'에서 발언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결국 수사의 핵심은 '조사 대상자들의 발언을 통한 판단, 그 사상에 대한 자백유도를 통해 내란음모 피의사실'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수사 도중 국정원 수사관은 시종일관 소환자들의 페이스북 등 감시를 통해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네가 너를 알고 있으나 빨리 자백해라'는 메시지를 주었다.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위협적이고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소환자들의 묵비권은 형해화되었고 수사과정에서 오랫동안 본인이 국정원의 사찰과 감시의 대상이 되어왔음을 확인하는 순간 공포와 위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2. 무소불위 국정원, 그 권한이 낳은 구조적인 인권침해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에 이르는 이른바 비밀경찰 국정원은 외양으로는 '정보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실제 국정원이 작동하는 원리는 '실행기관'으로서 그 위치를 잡고 있다. 국가안보를 위한다지만 실제로 정권/진영/권력의 안위 보호를 위한 정보기관의 '정보수집'은 그냥 수집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행위를 만들어내는 힘으로 작동한다.

분단체제이라는, 국가보안법체제이라는 한반도의 특수성 속에서 국정원은 세계 다른 어떤 정보기관들보다도 독특하게 대공 업무에 관한 '수사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수사권은 행사소송절차에 따른 적법절차로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앞서 국정원이 이른바 내란음모 소환자들을 수사할 때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는지 살펴보았다. 내란음모 사건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조작간첩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의 사례는 정말 빙산에 일각일 뿐이다. 국정원이라는 비밀기구의 특성상 외부에서 감시와 통제가 어려운 조건에서 국정원이라는 존재는 구조적인 인권침해의 상수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국정원이 단순 정보기관이 아닌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공안정보 수집권한뿐 아니라 공안범죄 수사권한을 '함께 갖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기관은 잠재적 위험요소에 기준하여 비밀리에 정보수집활동을 벌여 왔다. 반면 범죄수사는 엄격한 적법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 정보수집 활동과 수사집행 활동이 각기 다른 원칙에 따라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 활동에 대한 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는 비밀경찰이 왜 인권에 대한 위협인지 알 수 있다²⁾. 국가안보를 다룬다는 비밀주의 특성상 그 활동방식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국정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없고 결국 국정원이

2) 장여경, [벼리] 국정원의 인터넷 활동과 인권, <인권오름> 365호 2013년 10월 10일자

흘린 정보로 세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비밀정보기관의 수사권은 결국 인권침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한국사회는 비밀경찰 국정원에게 여전히 모호하고 그래서 광범위하게 정보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는 모른다(국정원이 사고를 치지 않은 이상!). 국정원이 무슨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는지? 수집된 정보들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집적되고 유통되고 관리되는지? 국정원이 정보수집업무라고 하면서 해왔던 광범위한 사찰은 정권을 비판한 특정 집단들에게만 향한 걸까? 아닐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관념은 자유로운 양심, 사상, 표현 및 소통을 억압하고 민주사회에 다양한 의견형성을 '인위적으로' 가로 막는다. 보이지 않는 물리적인 힘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동안 우리는 그것을 민주주의 사회의 작동으로 오독한다. 우리가 아무리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 등 기본권의 소중함을 외쳐도, 한국정부가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했다고 해도,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이라고 해도 국정원과 같은 존재가 있는 이상 인권과 민주주의는 진전할 수 없고 또한 양립할 수 없다. 그래서 비밀경찰 '국정원의 존재' 자체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이 필요하다.

국정원에 의해 내란음모 사건이 터트려지기 3일 전 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 조작되었다고 확인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 현대사에 등장하는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의 인권유린을 떠올릴 필요도 없이 불과 사건발생 3일전에 법원이 국정원에 의한 조작간첩 사건을 선고했음에도 한국사회는 국정원에 의해 휘둘러졌다. 비밀경찰의 정치는 군부독재시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국정원이라는 비밀정보기관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한 한국사회에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중보부로부터 시작한 비밀경찰 국정원의 역사가 40여년이 넘고 그동안 발생한 인권침해가 수도 없이 많은데 사회운동으로서 국정원에 대한 전문적인 감시단체 하나 없는 현실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국정원에 의한 통합진보당원들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사회운동의 힘이 국정원을 겨냥하지 못한 채, 공안탄압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한 채 지난 3년이 흘러갔다. 그 사이 국정원은 올 초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고 또다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기회를 시시탐탐 노리고 있다.

3. 국정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흥행할 수 있었던 한국사회의 구조

내란음모 사건을 받아들이는 한국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국정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흥행할 수 있었던 한국사회의 구조는 무엇이었나를 심각하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20년 민주주의로 이루었다고 믿고 싶었던 성취들이 신기루 같은 것은 아니었는지 한국사회에 대해 보다 날카로운 분석과 인식이 필

요하다. 그 분석과 인식의 틀로서 한상희 선생님이 제시한 48년 체제의 지속이나 반공주의에 동의하고 이에 더해 국가보안법 체제, 분단 체제를 더해보기로 한다.

반복, 반공, 분단에 뿌리내린 국가보안법 체제³⁾

21세기에 한국사회에서 원내 제도정당을 해산시키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마녀사냥이 한창이던 15세기 중세 유럽도 아니고 미소 체제대결 가운데 나타난 매카시즘 광풍도 아니다. 종북몰이 토양은 반복, 반공, 분단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있기에 가능하다. 아래로부터 면면히 흐르면서 변주된 모습으로, 그 변주된 모습은 국정원이 들고 나온 ‘내란음모’ 카드로부터 시작한다.

국정원에 의한 내란음모 사건이 터졌을 때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구성도 아니고 형법상 내란음모라니,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내란음모를 가리켜 ‘쉬어가는 페이지’라고 한다.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존재감도 없는 형법조항이라는 것. 당시 상황에 대해, 미디어스 김완 기자는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했으면 이렇게 크게 보도되지 않았을 것이다. 내란음모라면 뭐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했다. 국정원은 이석기 씨에게 형법상 내란음모죄를 적용한 것 말고도 국가보안법 7조를 적용하였다. 포장은 ‘내란음모’지만 내용물은 ‘국가보안법 위반⁴⁾’이다.

내란음모 선동이라는 죄는 국가보안법이라는 한국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힘이 있기에 가능했다. 이미 국가보안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음에도 형법까지 동원하여 통합진보당 당원들을 옥죄는 국정원과 검찰, 법원의 모습은 집회참여자들에게 집시법에 더해 형법인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식과 사뭇 비슷해 보인다.

3) 국가보안법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을 ‘국가보안법 체제’라고 부를 수 있다. 국가보안법이 견고한 재생산구조를 가지고서 지속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1970년대에 대하여 ‘유신체제’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었다. ‘국가보안법 체제’는 이와 동일한 차원의 개념이다. 이 때의 체제란 특정 개인의 퍼스널리티나 정치세력의 집권을 넘어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구조화된 질서로서 재생산되고 상당한 지속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보안법은 단순한 법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성격과 변화에서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로서 작용해왔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하는 10가지 이유』 중에서 인용)

4) 2014년 2월 17일 1심 재판부는 이석기에 대한 내란음모·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4~7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2014년 8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의 2심 재판부는 내란죄를 저지르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2심 재판부는 이석기의 내란선동과 국보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1심보다 형을 낮춰 징역 2~5년을 선고하였고,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여파로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되었다. -출처: 위키백과

자유와 적을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우리사회는 국가보안법 체제를 안착시켰고, 헌법기관들은 안보관련 기구들에게 주권의 지위를 넘겨줌으로써 기본권 파괴를 가져왔다. 국가보안법은 지배권력의 축이자 지배체제의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법률이다.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배 교수의 글 『전투적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중에서

재미있는 점은 국가보안법 체제 하에서 보수우파세력도 과거와 같은 ‘공안몰이’로는 ‘(그들이 말하는)종북세력’에 대응하는 것이 한계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앞서 예를 든 것처럼 공안세력은 국가보안법 사건(왕재산 사건, 서울시간첩사건)으로 재미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보수우익세력은 새로운 사상검증의 발판을 ‘종북 프레임’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국가보안법으로 걸려들지 않는 다양한 정치세력을 ‘종북세력’이라 이름 짓고 퇴치하거나 배제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즉 북을 따르는 세력들은 제거돼야 할 악일 뿐이라고 사회적으로 굳건히 합의된 곳에서는 언제든지 빨갱이 사냥이 활개 칠 수 있다. 우리사회는 왜 종북을 제거해야 할 대상인지를 문제 삼지 못하고 자신이 종북이 아님을 증명해야만 했다. 그런 사회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은 ‘내가 종북은 아니지만’으로 시작하는 어법을 쓰게 된다. 종북몰이에 대응하는 진보운동 역시 국가보안법이라는 체제 안에 갇혀서 ‘내가 통합진보당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북이 언급되는 순간 멈추는 인권

‘종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에서 ‘북’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야 한다. 분단체제가 만들어놓은 반공, 반복, 분단 이데올로기 속에서 우리는 매우 특수한 방식으로 이미 북을 수용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에 북을 찬양하는 이른바 ‘불법게시물’이 올라와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로 삭제명령을 받았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삭제명령이 부당하니 검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해보았다. 우리는 국가권력에게 게시물을 왜 삭제해야 하느냐고 질문했지만, 법원은 성의 없이 ‘국가보안법 7조에 따른 불법게시물이니 삭제하라’고만 했다. 뭔가 견고한 벽 앞에 딱 멈춰있는 느낌이었다. 명백하고 현저한 위험이 없는 표현물들이 단지 북의 주의 주장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사라져야 할 운명이란니. 통합진보당 해산 경우도 거칠게 이야기하면, 통합진보당의 주의 주장이 북의 주의 주장과 동일하니 해산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불법게시물 삭제명령과 거의 흡사한 논리적인 구조를 갖는다.

국가보안법은 지난 20년간 유엔인권기구로부터 폐지와 개정 권고를 받아왔던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자리 매김 되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유엔인권기구에 ‘한결같이’ 북의 존재를 들먹이며 권리 제한의 타당성을 역설해왔다.

지난 6월 유엔 자유권규약에 따라 한국정부가 정기적으로 한국의 인권상황을 보고하고 유엔으로부터 심의 받는 자리에서 한국정부의 답변은 “국가보안법 제7조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대치한 상황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걸 알면서 북한의 주의 주장에 찬양 동조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악용되지 않도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다⁵⁾.

인권이 보편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겠지만, 특히 북이 언급되는 순간 한국사회에서 인 권은 멈추고 예외상태가 합리화된다. 그렇다보니, 국정원 등 공안세력은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모든 의제 를 ‘북’과 연결하여 물꼬를 튼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할 때도 국정원은 북의 테러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서울시 조작간첩사건 때도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받았지만 국정원은 끝까 지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확신하며 간첩을 잡으려다가 무리했다고 주장했다. 간첩조작도 문제이지만 ‘간첩을 필요로 하는’ 한국사회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비판을 함께 해야 한다.

물리적 힘으로서 위력을 갖는 분단체제

1948년 38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이 나뉘는 후 한반도는 분단이라는 조건에 의해 강력한 규정을 받는 곳 이 되었다. 3년간 끔직한 내전을 겪은 후에도 한반도의 남과 북은 평화체제로 이행하지 못한 채 지난 70년간 군사적 긴장 상태가 지속되었다. 분단체제는 남과 북 모두 강력한 국가주의, 남북 모두 상대를 적대시하는 법 제도, 초유의 군사비 지출, 헌법을 압도하는 공안기구들의 권력 강화로 귀결되었다. 한 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가능성이 높고 좌우 대립과 갈등이 내면화된 사회의 모습이 분단체제가 마 주하는 얼굴이다.

1987년의 민주화는 독재를 끝장냈지만 독재의 토대가 되었던 분단체제를 허물지는 못했기에, 위에 인용한 “민주적 법치주의 원리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헌법을 빈껍데기로 만들 수 있는 위험”은 87년 이후에도 여전히 남았던 것이며, 87년체제의 민주헌법에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면헌법’이 수반했던 것이다(백낙청 <2013년체제 만들기>, 창비 2012, 제7장 「한국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분단체제」 145~7면).

지배 권력은 1987년 6월 항쟁이 이끌어낸 ‘민주주의’ 이후에도 분단체제를 유지시켰고 매우 구체적인 물적 조건들을 통해 한국사회를 촘촘히 엮어냈다. 동아시아의 군사적 대치, 한반도에 배치된 엄청난 무 기들, 최근 사드배치까지 한반도의 군사화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분단체제는 한국

5) 백가윤,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① <인권오름> 465호 2016년 6월 17일자

사회 내적으로 징병제, 천문학적인 국방비, 헌법을 뛰어넘는 공안기구들의 활동으로 묶여있다. 사라지는 듯하지만 끈질긴 생명력으로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분단체제의 물리력을 우리의 운동은 향할 수밖에 없다.

메모